



제2903호 2023. 6. 30.(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5호 방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6호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7호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8호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9호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5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0호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6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2호 불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7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4호 완주 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9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5호 농업진흥지역 정정(해제) 고시 61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17호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내용 공고 6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2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6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2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65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26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66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29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6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30호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68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31호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69

지시사항

- 2023. 6. 23.(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70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109호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72
- 군산시 고시 제2023-110호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3
- 군산시 고시 제2023-111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6
- 군산시 고시 제2023-112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7
- 익산시 고시 제2023-1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78

- 정읍시 고시 제2023-10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81
- 정읍시 공고 제2023-102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82
- 완주군 고시 제2023-65호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85
- 완주군 공고 제2023-1135호 군계획시설(방수설비:구와배수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87

기 타

-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3-2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 송달 93
-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3-3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 송달 94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5호

방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방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사 업 명 : 방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 외 5개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용수 공급
4. 수 혜 면 적 : 214ha (신규 : 137ha, 보강 : 77ha)
5. 사 업 개 요
 - 저수지 2개소
 - 문치저수지 : 제체(H=27.0m, L=200.0m), 여수토(H=1.3m, L=29.0m)
취수시설(사통4공 D0.4~0.3m), 복통(L=120.0m, 2R=1.8m)
 - 금상저수지 : 제체(H=29.0m, L=164.0m), 여수토(H=1.3m, L=24.0m)
취수시설(사통4공 D0.4~0.3m), 복통(L=138.0m, 2R=1.8m)
 - 양수장 2개소 신설
 - 방화양수장 : Ø250mm×110kW×47mH×1대, Q=7.2m³/min
 - 운남양수장 : Ø250mm×55kW×19mH×1대, Q=7.8m³/min
 - 평야부 3조 2.25km
6. 사업 기간 : 2014.04. ~ 2022.12. (9개년)
7. 총 사업비 : 35,732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9.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예(전화063-650-7054)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6호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사업명 :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유천리일원
3. 사업목적 : 농경지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혜면적 : 146.7ha (유역면적 543.6ha)
5. 사업개요
 - 수원공 : 배수문 2개소 정비, 신활 게이트 펌프 신설
 - 신활게이트펌프(신설) : $B \times H \times \text{련} = 2.0\text{m} \times 2.0\text{m} \times 2\text{련}$ (펌프 $0.7\text{m}^3/\text{sec}$)
 - 신활 배수문(정비) : $B \times H \times \text{련} = 2.0\text{m} \times 1.0\text{m} \times 1\text{련}$
 - 호암 배수문(정비) : $B \times H \times \text{련} = 3.0\text{m} \times 3.0\text{m} \times 4\text{련}$
 - 평야부 : 배수로 6조 $L=5,055\text{m}$
 - 지선배수로 : 확장·정비 6조 $L=5,055\text{m}$
 - 복토 : 1.3ha (복토량 $3,762\text{m}^3$)
6. 사업기간 : 2018.07. ~ 2022.12. (5개년)
7. 총사업비 : 10,967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9.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화063-580-1051)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7호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사업명 :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종덕리, 화봉리, 내광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경지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혜면적 : 139.87ha (유역면적 547.34ha)
5. 사업개요
 - 수원공 :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 평사배수장(신설) : $Q=7.8\text{m}^3/\text{s}$ ($\varnothing 1200\text{mm} \times 220\text{kw} \times 2\text{대}$, $\varnothing 600\text{mm} \times 60\text{kw} \times 2\text{대}$)
 - 평사배수문(신설) : $B \times H \times \text{련} = 1.5\text{m} \times 1.5\text{m} \times 2\text{련}$
 - 평야부 : 배수로 3조 L=2,099m
 - 유입수로 : 확장·정비 1조 L=649m
 - 1호배수로 : 확장·정비 1조 L=885m
 - 2호배수로 : 확장·정비 1조 L=565m
 - 복토 : 4.7ha (복토량 16,785 m^3)
6. 사업기간 : 2019. 10. ~ 2022. 12.. (4개년)
7. 총사업비 : 11,292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화 063-540-1177)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8호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사 업 명 :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1개리 심원면 궁산리 외 2개리
3. 사 업 목 적 : 농경지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해 면 적 : 353.06ha (유역면적 1,389.73ha)
5. 사 업 개 요
 - 수원공 : 배수문 2개소(신설)
 - (구)동호배수문 : 5.0m×3.0m×4련
 - 부동배수문 : 1.2m×1.2m×1련
 - 평야부 : 배수로 확장·정비 17조 L=11,259m
 - 복 토 : 20.63ha
6. 사업 기간 : 2018.7. ~ 2022.12. (5개년)
7. 총 사업비 : 19,368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9.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비치(063-560-1529)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69호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사업명 :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치 : 고창군 대산면 대장리, 공음면 군유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경지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혜면적 : 73.4ha (유역면적 873.4ha)
5. 사업개요
 - 수원공 : 배수문 5개소(신설)
 - 1호 배수문 : 1.5m×1.5m×2련
 - 6호 배수문 : 2.5m×2.5m×2련
 - 7호 배수문 : 2.0m×1.5m×2련
 - 8호 배수문 : 2.5m×1.5m×2련
 - 9호 배수문 : 2.5m×1.5m×2련
 - 평야부 : 배수로 확장·정비 5조 L=3,612m
 - 복토 : 10.6ha
6. 사업기간 : 2019.12. ~ 2022.12. (4개년)
7. 총사업비 : 6,383백만원
8.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9. 기타 : 관계도서는 고창군 건설도시과에 비치(063-560-2555)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0호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사업명 :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치 : 전북 진안군 마령면, 성수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경지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혜면적 : 55.9ha (유역면적 699.3ha)
5. 사업개요
 - 수원공 : 배수문 8개소 신설·교체
 - 마령2-1배수문(교체) : 2.0m×1.5m×1련
 - 마령3-1배수문(신설) : 4.0m×1.0m×1련
 - 마령3-2배수문(교체) : D800×1련
 - 마령3-3배수문(교체) : D800×2련
 - 성수1-1배수문(교체) : 1.5m×1.5m×1련
 - 성수2-1배수문(신설) : 2.0m×2.0m×1련
 - 성수2-2배수문(신설) : 1.5m×1.5m×1련
 - 성수3-1배수문(교체) : 1.8m×1.0m×1련
 - 평야부 : 배수로 확장·정비 10조 L=3,228m
 - 복토 : 5.87ha(18,994m³)
6. 사업기간 : 2020.12. ~ 2022.12. (3개년)
7. 총사업비 : 3,588백만원
8. 사업시행자 : 진안군수(위탁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9. 기타 : 관계도서는 진안군 건설교통과에 비치(063-430-2401)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2호

불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2-256(2022.10.14.)호로 고시한 불로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사업명 : 불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김제시 백구면, 금구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337ha
5. 사업개요
 - 수원공
 - 취입보 5개소, 배수장 1개소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시험비, 중기운반 등
6. 사업기간 : 2022. 10. ~ 2025. 12.
7. 총사업비 : 당초 5,632백만원 → 변경 5,274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화063-540-115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백구면 유강리	299-6	답	20	20	국(기획 재정부)					
2	백구면 유강리	299-4	잡	271	271	국(기획 재정부)					
3	백구면 유강리	300-4	잡	1,091	444	국(기획 재정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174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I. 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
- 면적 : (기정)2,110,582.8㎡ (1공구 1,868,913.6㎡, 2공구 241,669.2㎡)
(변경)2,110,582.7㎡ (1공구 1,868,913.6㎡, 2공구 180,152.6㎡, 3공구 61,516.5㎡)
 - 산업시설지구 : (기정)1,715,763.7㎡ (1공구 1,532,287.4㎡, 2공구 183,476.3㎡)
(변경)1,715,763.6㎡ (1공구 1,532,287.4㎡, 2공구 121,997.7㎡, 3공구 61,516.5㎡)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 394,819.1㎡ (1공구:336,626.2㎡, 2공구:58,192.9㎡)
- 산업단지 외 사업 : 9,781㎡, 6개소(도로개설)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완주군에 강점이 있는 자동차/트레일러, 기계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통하여 신산업생산의 선도적 지역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산업 전략기지 구축을 위한 유치기반 마련에 따른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상업공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나아가 전북지역의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벨트 기반마련을 통하여 신성장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대표 최충식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 166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2013년 ~ 2023년 06월 30일
(변경)2013년 ~ 2023년 12월 31일
 - (1공구) : 2013년 ~ 2021년 12월 31일
 - (2공구) : 2013년 ~ 2023년 06월 30일
 - (3공구) : 2013년 ~ 2023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비 고
산업 시설 용지	유치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한국표준 산업분류 10차개정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802,072.4	764,443.8	37,628.6	-	100.0	95.3	4.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152,173.9	152,173.9	-	-	19.0	19.0	-	-	
금속가공제품 제조(25)	18,832.7	18,832.7	-	-	2.3	2.3	-	-	
전자부품(26) +전기장비(28)	73,503.0	73,503.0	-	-	9.2	9.2	-	-	
기타 기계 및 장비(29)	213,874.1	213,874.1	-	-	26.7	26.7	-	-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231,230.6	193,602.0	37,628.6	-	28.8	24.1	4.7	-	
기타 운송장비(31)	112,458.1	112,458.1	-	-	14.0	14.0	-	-	

※ 3공구 : 산업시설용지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표(총괄)(변경)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천제)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2,110,582.8	1,868,913.6	241,669.2	2,110,582.7	1,868,913.6	180,152.6	61,516.5	감)0.1	100.0	88.5	11.5	100.0	88.5	8.6	2.9		
산업시설용지	1,190,443.2	1,152,814.6	37,628.6	1,190,443.2	1,152,814.6	37,628.6	-	-	56.4	54.6	1.8	56.4	54.6	1.8	-		
산업시설	802,072.4	764,443.8	37,628.6	802,072.4	764,443.8	37,628.6	-	-	38.0	36.2	1.8	38.0	36.2	1.8	-		
연구시설	100,219.0	100,219.0	-	100,219.0	100,219.0	-	-	-	4.7	4.7	-	4.7	4.7	-	-		
물류시설	288,151.8	288,151.8	-	288,151.8	288,151.8	-	-	-	13.7	13.7	-	13.7	13.7	-	-		
주거용지	212,843.9	191,859.9	20,984.0	212,843.9	191,859.9	20,984.0	-	-	10.1	9.1	1.0	10.1	9.1	1.0	-		
단독주택	30,064.1	27,161.0	2,903.1	30,064.1	27,161.0	2,903.1	-	-	1.4	1.3	0.1	1.4	1.3	0.1	-		
공동주택	137,951.1	137,951.1	-	137,951.1	137,951.1	-	-	-	6.5	6.5	-	6.5	6.5	-	-		
근린생활시설	19,688.6	13,836.3	5,852.3	19,688.6	13,836.3	5,852.3	-	-	0.9	0.7	0.3	1.0	0.7	0.3	-		
준주거	25,140.1	12,911.5	12,228.6	25,140.1	12,911.5	12,228.6	-	-	1.2	0.6	0.6	1.2	0.6	0.6	-		
지원시설용지	63,122.4	5,867.5	57,254.9	63,122.4	5,867.5	14,623.3	4,631.6	-	3.0	0.3	2.7	3.0	0.3	0.7	2.0		
지원시설	60,750.0	3,495.1	57,254.9	60,750.0	3,495.1	14,623.3	4,631.6	-	2.9	0.2	2.7	2.9	0.2	0.7	2.0		
어린이집	1,184.9	1,184.9	-	1,184.9	1,184.9	-	-	-	0.1	0.1	-	0.1	0.1	-	-		
종교시설	1,187.5	1,187.5	-	1,187.5	1,187.5	-	-	-	0.1	0.1	-	0.1	0.1	-	-		
공공시설용지	644,173.3	518,371.6	125,801.7	644,173.2	518,371.6	106,916.7	18,884.9	감)0.1	30.5	24.5	6.0	30.5	24.5	5.1	0.9		
초등학교	15,129.9	15,129.9	-	15,129.9	15,129.9	-	-	-	0.7	0.7	-	0.7	0.7	-	-		
중학교	15,423.8	15,423.8	-	15,423.8	15,423.8	-	-	-	0.7	0.7	-	0.7	0.7	-	-		
공공청사	2,219.2	2,219.2	-	2,219.2	2,219.2	-	-	-	0.1	0.1	-	0.1	0.1	-	-		
도로	306,618.6	239,286.3	67,332.3	306,527.0	239,329.9	54,563.7	12,633.4	감)91.6	14.5	11.3	3.2	14.5	11.3	2.6	0.6		
보행자도로	3,109.2	818.0	2,291.2	3,155.4	818.0	433.5	1,903.9	증)46.2	0.1	-	0.1	0.1	-	-	0.1		
주차장	25,425.7	12,667.1	12,758.6	25,425.7	12,667.1	8,411.0	4,347.6	-	1.2	0.6	0.6	1.2	0.6	0.4	0.2		
광장	1,390.8	488.5	902.3	1,390.8	488.5	902.3	-	-	0.1	-	-	0.1	-	0.1	-		
저류지	29,250.8	29,250.8	-	29,250.8	29,250.8	-	-	-	1.4	1.4	-	1.4	1.4	-	-		
공원·녹지	245,605.3	203,088.0	42,517.3	245,650.6	203,044.4	42,606.2	-	증)45.3	11.7	9.7	2.0	11.7	9.7	2.0	-		
공원	32,951.8	22,692.7	10,259.1	32,948.5	22,692.7	10,255.8	-	감)3.3	1.6	1.1	0.5	1.6	1.1	0.5	-		
완충녹지	32,942.3	13,819.0	19,123.3	32,942.3	13,819.0	19,123.3	-	-	1.6	0.7	0.9	1.6	0.7	0.9	-		
연결녹지	55,383.7	51,217.3	4,166.4	55,365.6	51,217.3	4,148.3	-	감)18.1	2.6	2.4	0.2	2.6	2.4	0.2	-		
하천	118,516.5	109,548.0	8,968.5	118,626.8	109,548.0	9,078.8	-	증)110.3	5.6	5.2	0.4	5.6	5.2	0.4	-		
공공공지	5,811.0	5,811.0	-	5,767.4	5,767.4	-	-	감)43.6	0.3	0.3	-	0.3	0.3	-	-		

< 산업시설지구(변경) >

구분	면적(㎡)								증감 (천제)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계	1,715,763.7	1,532,287.4	183,476.3	1,715,763.6	1,532,287.4	121,959.7	61,516.5	감)0.1	100.0	89.3	10.7	100.0	89.3	7.1	3.6	
산업시설용지	1,190,443.2	1,152,814.6	37,628.6	1,190,443.2	1,152,814.6	37,628.6	-	-	69.4	67.2	2.2	69.4	67.2	2.2	-	
산업시설	802,072.4	764,443.8	37,628.6	802,072.4	764,443.8	37,628.6	-	-	46.8	44.6	2.2	46.8	44.6	2.2	-	
연구시설	100,219.0	100,219.0	-	100,219.0	100,219.0	-	-	-	5.8	5.8	-	5.8	5.8	-	-	
물류시설	288,151.8	288,151.8	-	288,151.8	288,151.8	-	-	-	16.8	16.8	-	16.8	16.8	-	-	
지원시설용지	60,750.0	3,495.1	57,254.9	60,750.0	3,495.1	14,623.3	42,631.6	-	3.5	0.2	3.3	3.5	0.2	0.8	2.5	
지원시설	60,750.0	3,495.1	57,254.9	60,750.0	3,495.1	14,623.3	42,631.6	-	3.5	0.2	3.3	3.5	0.2	0.8	2.5	
공공시설용지	464,570.5	375,977.7	88,592.8	464,570.4	375,977.7	69,707.8	18,884.9	감)0.1	27.1	21.9	5.2	27.1	21.9	4.1	1.1	
도로	213,926.9	164,228.1	49,698.8	213,837.9	164,228.1	36,976.4	12,633.4	감)89.0	12.5	9.5	3.0	12.5	9.5	2.2	0.8	
보행자도로	1,903.9	-	1,903.9	1,903.9	-	-	1,903.9	-	0.1	-	0.1	0.1	-	-	0.1	
주차장	18,912.7	8,225.4	10,687.3	18,912.7	8,225.4	6,339.7	4,347.6	-	1.1	0.5	0.6	1.1	0.5	0.4	0.2	
저류지	29,250.8	29,250.8	-	29,250.8	29,250.8	-	-	-	1.7	1.7	-	1.7	1.7	-	-	
공원·녹지	200,576.2	174,273.4	26,302.8	200,665.1	174,273.4	26,391.7	-	증)88.9	11.7	10.2	1.5	11.7	10.2	1.5	-	
공원	13,507.1	9,511.4	3,995.7	13,503.8	9,511.4	3,992.4	-	감)3.3	0.8	0.6	0.2	0.8	0.6	0.2	-	
완충녹지	15,094.0	5,921.8	9,172.2	15,094.0	5,921.8	9,172.2	-	-	0.9	0.3	0.5	0.9	0.3	0.6	-	
연결녹지	53,458.6	49,292.2	4,166.4	53,440.5	49,292.2	4,148.3	-	감)18.1	3.1	2.9	0.3	3.1	2.9	0.2	-	
하천	118,516.5	109,548.0	8,968.5	118,626.8	109,548.0	9,078.8	-	증)110.3	6.9	6.4	0.5	6.9	6.4	0.5	-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변경) >

구분	면적(㎡)							증감 (천제)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계	394,819.1	336,626.2	58,192.9	394,819.1	336,626.2	58,192.9	-	100.0	85.3	14.7	100.0	85.3	14.7		
주거용지	212,843.9	191,859.9	20,984.0	212,843.9	191,859.9	20,984.0	-	53.9	48.6	5.3	53.9	48.6	5.3		
단독주택	30,064.1	27,161.0	2,903.1	30,064.1	27,161.0	2,903.1	-	7.6	6.9	0.7	7.6	6.9	0.7		
공동주택	137,951.1	137,951.1	-	137,951.1	137,951.1	-	-	34.9	34.9	-	34.9	34.9	-		
근린생활시설	19,688.6	13,836.3	5,852.3	19,688.6	13,836.3	5,852.3	-	5.0	3.5	1.5	5.0	3.5	1.5		
준주거	25,140.1	12,911.5	12,228.6	25,140.1	12,911.5	12,228.6	-	6.4	3.3	3.1	6.4	3.3	3.1		
지원시설용지	2,372.4	2,372.4	-	2,372.4	2,372.4	-	-	0.6	0.6	-	0.6	0.6	-		
어린이집	1,184.9	1,184.9	-	1,184.9	1,184.9	-	-	0.3	0.3	-	0.3	0.3	-		
종교시설	1,187.5	1,187.5	-	1,187.5	1,187.5	-	-	0.3	0.3	-	0.3	0.3	-		
공공시설용지	179,602.8	142,393.9	37,208.9	179,602.8	142,393.9	37,208.9	-	45.5	36.1	9.4	45.5	36.1	9.4		
초등학교	15,129.9	15,129.9	-	15,129.9	15,129.9	-	-	3.8	3.8	-	3.8	3.8	-		
중 학교	15,423.8	15,423.8	-	15,423.8	15,423.8	-	-	3.9	3.9	-	3.9	3.9	-		
공공청사	2,219.2	2,219.2	-	2,219.2	2,219.2	-	-	0.6	0.6	-	0.6	0.6	-		
도 로	92,691.7	75,058.2	17,633.5	92,689.1	75,018.8	17,587.3	감)2.6	23.5	19.0	4.5	23.5	19.0	4.5		
보행자도로	1,205.3	818.0	387.3	1,251.5	818.0	433.5	증)46.2	0.3	0.2	0.1	0.3	0.2	0.1		
주 차 장	6,513.0	4,441.7	2,071.3	6,513.0	4,441.7	2,071.3	-	1.6	1.1	0.5	1.6	1.1	0.5		
광 장	1,390.8	488.5	902.3	1,390.8	488.5	902.3	-	0.4	0.1	0.2	0.4	0.2	0.2		
공원·녹지	45,029.1	28,814.6	16,214.5	44,985.5	27,771.0	16,214.5	감)43.6	11.4	7.3	4.1	11.4	7.3	4.1		
공 원	19,444.7	13,181.3	6,263.4	19,444.7	13,181.3	6,263.4	-	4.9	3.3	1.6	4.9	3.3	1.6		
완충녹지	17,848.3	7,897.2	9,951.1	17,848.3	7,897.2	9,951.1	-	4.5	2.0	2.5	4.5	2.0	2.5		
연결녹지	1,925.1	1,925.1	-	1,925.1	1,925.1	-	-	0.5	0.5	-	0.5	0.5	-		
공공공지	5,811.0	5,811.0	-	5,767.4	5,767.4	-	감)43.6	1.5	1.5	-	1.5	1.5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구분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소계	기정	68	16,750	309,727.8	19	6,633	115,810.9	10	3,822	82,905.7	39	6,295	111,011.2
		증감	-	-	감)45.4	-	-	감)91.5	-	-	감)0.1	-	-	증)46.2
		변경	68	16,750	309,682.4	19	6,633	115,719.4	10	3,822	82,905.6	39	6,295	111,057.4
	1공구	기정	44	12,129	240,104.3	18	4,703	91,404.9	7	2,873	59,868.6	19	4,553	88,830.8
		증감	-	-	증)43.6	-	-	증)43.6	-	-	-	-	-	-
		변경	44	12,129	240,147.9	18	4,703	91,448.5	7	2,873	59,868.6	19	4,553	88,830.8
	2공구	기정	24	4,621	69,623.5	1	1,930	24,406.0	3	949	23,037.1	20	1,742	22,180.4
		증감	감)13	감)1,204	감)14,633.3	-	감)91	감)335.9	감)2	감)429	감)7,085.1	감)11	감)684	감)7,205.3
		변경	11	3,417	54,997.2	1	1,839	24,070.1	1	520	15,952.0	9	1,058	14,975.1
	3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증)13	증)1,204	증)14,537.3	-	증)91	증)200.8	증)2	증)429.0	증)7,085.0	증)11	증)684	증)7,251.5
		변경	13	1,204	14,537.3	-	91	200.8	2	429.0	7,085.0	11	684	7,251.5
대로	소계	기정	5	4,420	108,691.6	1	908	1,842.2	1	1,027	37,988.3	3	2,485	68,861.1
		증감	-	-	감)88.9	-	-	감)88.9	-	-	-	-	-	-
		변경	5	4,420	108,602.7	1	908	1,753.3	1	1,027	37,988.3	3	2,485	68,861.1
	1공구	기정	4	3,258	91,420.2	1	182	466.3	1	737	26,225.3	2	2,339	64,728.6
		증감	-	-	-	-	-	-	-	-	-	-	-	-
		변경	4	3,258	91,420.2	1	182	466.3	1	737	26,225.3	2	2,339	64,728.6
	2공구	기정	1	1,162	17,271.4	-	726	1,375.9	-	290	11,763.0	1	146	4,132.5
		증감	-	감)91	감)289.7	-	감)91	감)289.7	-	-	-	-	-	-
		변경	1	1,071	16,981.7	-	635	1,086.2	-	290	11,763.0	1	146	4,132.5
	3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	증)91	증)200.8	-	증)91	증)200.8	-	-	-	-	-	-
		변경	-	91	200.8	-	91.0	200.8	-	-	-	-	-	-
중로	소계	기정	31	9,348	172,639.3	7	3,778	92,741.7	9	2,795	44,917.4	15	2,775	34,980.2
		증감	-	-	감)0.1	-	-	-	-	-	감)0.1	-	-	-
		변경	31	9,348	172,639.2	7	3,778	92,741.7	9	2,795	44,917.3	15	2,775	34,980.2
	1공구	기정	20	6,633	126,544.8	6	2,961	73,678.0	6	2,136	33,643.3	8	1,536	19,223.5
		증감	-	-	-	-	-	-	-	-	-	-	-	-
		변경	20	6,633	126,544.8	6	2,961	73,678.0	6	2,136	33,643.3	8	1,536	19,223.5
	2공구	기정	11	2,715	46,094.5	1	817	19,063.7	3	659	11,274.1	7	1,239	15,756.7
		증감	감)5	감)828	감)12,432.7	-	-	-	감)2	감)429	감)7,085.1	감)3	감)399	감)5,347.6
		변경	6	1,887	33,661.8	1	817	19,063.7	1	230	4,189.0	4	840	10,409.1
	3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증)5	증)828	증)12,432.6	-	-	-	증)2	증)429	증)7,085.0	증)3	증)399	증)5,347.6
		변경	5	828	12,432.6	-	-	-	2	429	7,085.0	3	399	5,347.6
소로	소계	기정	32	2,982	28,396.9	11	1,947	21,227.0	-	-	-	21	1,035	7,169.9
		증감	-	-	증)43.6	-	-	감)2.6	-	-	-	-	-	증)46.2
		변경	32	2,982	28,440.5	11	1,947	21,224.4	-	-	-	21	1,035	7,216.1
	1공구	기정	20	2,238	22,139.3	11	1,560	17,260.6	-	-	-	9	678	4,878.7
		증감	-	-	증)43.6	-	-	증)43.6	-	-	-	-	-	-
		변경	20	2,238	22,182.9	11	1,560	17,304.2	-	-	-	9	678	4,878.7
	2공구	기정	12	744	6,257.6	-	387	3,966.4	-	-	-	12	357	2,291.2
		증감	감)8	감)285	감)1,903.9	-	-	감)46.2	-	-	-	감)8	감)285	감)1,857.7
		변경	4	459	4,353.7	-	387	3,920.2	-	-	-	4	72	433.5
	3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증)8	증)285	증)1,903.9	-	-	-	-	-	-	증)8	증)285	증)1,903.9
		변경	8	285	1,903.9	-	-	-	-	-	-	8	285	1,903.9

* 공구분할에 따라 구분되는 대로1-1호선, 대로2-1호선은 1공구에 반영하여 1개소로 산정

○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25,425.7	-	25,425.7	14	-1공구 : 8개소(12,667.1m ²) -2공구 : 6개소(12,758.6m ²)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25,425.7	-	25,425.7	14	-1공구 : 8개소(12,667.1m ²) -2공구 : 4개소(8,411.0m ²) -3공구 : 2개소(4,347.6m ²)

2) 공간시설계획(변경)

○ 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광 장	교통광장	81,317 (1,390.8)	-	81,317 (1,390.8)	1	-1공구 : 488.5m ² -2공구 : 902.3m ²

* ()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면적임

○ 공원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 원	계	32,951.8	감)3.3	32,948.5	8	-	8	
		근린공원	11,678.4	-	11,678.4	1	-	1	1공구
		소 공 원	21,273.4	감)3.3	21,270.1	7	-	7	-1공구 : 5개소(11,014.3m ²) -2공구 : 2개소(10,255.8m ²)

○ 녹지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녹 지	계	88,326.0	감)18.1	88,307.9	11	
		연결녹지	55,383.7	감)18.1	55,365.6	6	-연결녹지 6개소 중 일부구간 2공구(2개소 : 4,148.3m ²)
		완충녹지	32,942.3	-	32,942.3	5	-1공구 : 3개소(13,819.0m ²) -2공구 : 2개소(19,123.3m ²)

○ 공공공지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5,811.0	감)43.6	5,767.4	3	1공구

3)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 학교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학 교	계	30,553.7	2	
		중 학 교	15,423.8	1	1공구
		초등학교	15,129.9	1	1공구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공공청사	공공청사	2,219.2	1	1공구

4) 방재시설계획(변경)

○ 하천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하 천	계	118,516.5	증)110.3	118,626.8	2	
		지방하천	110,596.9	증)110.3	110,707.2	1	석탑천 -1공구 : 104,303.0m ² -2공구 : 6,404.2m ²
		하천	7,919.6	-	7,919.6	1	만동천(소하천) 폐지(` 16.4.6) -1공구 : 5,245.0m ² -2공구 : 2,674.6m ²

○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29,250.8	2	산업시설지구 2개소, 1공구

5)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급수량 (m ³ /일)	공 급 계 획	비 고
공업용수	832	○ 정수장 기존 공업용수(25,000m ³ /day)와 미사용중인 생활용수(5,000m ³ /day)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 ○ 배수지의 적정 체류시간(12h) 확보를 위해 증설예정	
생활용수	6,455	○ 전주권광역상수도를 통하여 공급(익산 식품클러스터 송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부족분 공급) ○ 배수지의 적정 체류시간(12h) 확보를 위해 증설예정	

○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오수량 (m ³ /일)	처 리 계 획	비 고
계	6,015	○ 신설 및 기존 중계펌프장을 활용하여 삼례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통수능이 부족한 차집관거는 개량하여 처리하도록 함	
공업폐수	413		
생활오수	5,602		

* 오·폐수처리장 시설운용은 공장입주율 및 실 폐수유입량을 모니터링 후 폐수처리시설 18,000m³/일의 80%(14,400m³/일)수준 도달시 개량하여 처리토록 함

○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폐기물처리량 (kg/일)	처 리 계 획	비 고
생활 폐기물	1,244	○ 생활계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후 지자체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완주군 신규매립장 가동 전까지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시설계+지정폐기물)은 성상별 분리수거 후 최대한 자체 재활용 또는 주변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여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임 ○ 완주군 신규매립장 가동 후 발생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및 지정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신규 매립장에 연계 처리 계획임	
사업장 폐기물	54,732		

○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수요량	공 급 계 획	비 고
전력공급	산업시설용지	37,335kW	○ 봉동변전소(154kV)에서 전력공급 ○ 왕궁변전소 준공후 왕궁변전소에서 공급	
	기타주택 및 건축물	85,496kW		
열 공 급	산업시설용지	682,400Gcal/년	○ 전북도시가스(주)에서 공급	
	기타주택 및 건축물	126,716Gcal/년		

○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통신수요량(회선)	공 급 계 획	비 고
통신공급	6,867	○ 단지내 ONU(초고속망공급장치 기계실)를 설치하여 공급예정	

7.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구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계	482,702	400,539	82,162	-	100.0	83.0	17.0	-	
	용지비	170,392	155,172	15,220	-	35.3	32.1	3.1	• 토지·지장물보상, 간접보상, 부대비 등	
	조성비	215,145	170,242	44,903	-	44.6	35.3	9.3	• 조사설계비, 단지조성비 등	
	기타비용	97,165	75,125	22,040	-	20.1	15.6	4.6	• 각종부담금, 직접인건비, 관리비, 금융비용 등	
변경	계	482,702	361,708	102,124	18,870	100.0	74.9	21.2	3.9	
	용지비	170,392	149,143	19,621	1,628	35.3	30.9	4.1	0.3	• 토지·지장물보상, 간접보상, 부대비 등
	조성비	215,145	150,875	53,583	10,687	44.6	31.3	11.1	2.2	• 조사설계비, 단지조성비 등
	기타비용	97,165	61,690	28,920	6,555	20.1	12.7	6.0	1.4	• 각종부담금, 직접인건비, 관리비, 금융비용 등

나. 재원조달계획(변경)

○ 연차별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기정	계	482,702	9,202	143,302	49,788	48,041	93,465	71,029	67,875	-
		1공구	400,539	8,397	130,777	45,437	43,842	85,296	59,640	27,150	-
		2공구	82,162	805	12,525	4,351	4,199	8,169	11,389	40,725	-
	변경	계	482,702	10,212	141,632	49,189	48,034	22,210	111,927	32,616	66,882
		1공구	361,708	9,135	128,958	44,228	42,543	19,638	98,966	18,240	-
		2공구	102,124	1,077	12,674	4,961	5,491	2,572	12,961	11,508	50,880
	3공구	18,870	-	-	-	-	-	-	2,868	16,002	
용지비	기정	계	170,392	-	129,977	25,879	2,500	4,101	7,164	771	-
		1공구	155,172	-	118,617	23,617	2,281	3,743	6,606	308	-
		2공구	15,220	-	11,360	2,262	219	358	558	463	-
	변경	계	170,392	-	129,977	25,879	2,500	1,007	4,227	714	6,088
		1공구	149,143	-	118,617	23,617	2,281	890	3,738	-	-
		2공구	19,621	-	11,360	2,262	219	117	489	543	4,631
	3공구	1,628	-	-	-	-	-	-	171	1,457	
조성비	기정	계	215,145	3,725	1,241	13,353	33,709	75,145	32,966	55,006	-
		1공구	170,242	3,399	1,133	12,186	30,763	68,577	32,182	22,002	-
		2공구	44,903	326	108	1,167	2,946	6,568	784	33,004	-
	변경	계	215,145	3,725	1,241	13,586	33,718	9,594	87,981	20,629	44,671
		1공구	150,875	3,399	1,133	12,013	29,814	8,483	77,793	18,240	-
		2공구	53,583	326	108	1,573	3,904	1,111	10,188	2,389	33,984
	3공구	10,687	-	-	-	-	-	-	-	10,687	
기타비용	기정	계	97,165	5,477	12,084	10,556	11,832	14,219	30,899	12,098	-
		1공구	75,125	4,998	11,028	9,634	10,798	12,976	20,852	4,839	-
		2공구	22,040	479	1,056	922	1,034	1,243	10,047	7,259	-
	변경	계	97,165	6,487	10,414	9,724	11,816	11,609	19,719	11,273	16,123
		1공구	61,690	5,736	9,208	8,598	10,448	10,265	17,435	-	-
		2공구	28,920	751	1,206	1,126	1,368	1,344	2,284	8,576	12,265
	3공구	6,555	-	-	-	-	-	-	2,697	3,858	

○ 재원조달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기정	계	482,702	9,202	143,302	49,788	48,041	93,465	71,029	67,875	-
		1공구	400,539	8,397	130,777	45,437	43,842	85,296	59,640	27,150	-
		2공구	82,162	805	12,525	4,351	4,199	8,169	11,389	40,725	-
	변경	계	482,702	10,212	141,632	49,189	48,034	22,210	111,927	32,616	66,882
		1공구	361,708	9,135	128,958	44,228	42,543	19,638	98,966	18,240	-
		2공구	102,124	1,077	12,674	4,961	5,491	2,572	12,961	11,508	50,880
	3공구	18,870	-	-	-	-	-	-	2,868	16,002	
자체 자금	기정	계	482,702	9,202	143,302	49,788	48,041	93,465	71,029	67,875	-
		1공구	400,539	8,397	130,777	45,437	43,842	85,296	59,640	27,150	-
		2공구	82,162	805	12,525	4,351	4,199	8,169	11,389	40,725	-
	변경	계	482,702	10,212	141,632	49,189	48,034	22,210	111,927	32,616	66,882
		1공구	361,708	9,135	128,958	44,228	42,543	19,638	98,966	18,240	-
		2공구	102,124	1,077	12,674	4,961	5,491	2,572	12,961	11,508	50,880
	3공구	18,870	-	-	-	-	-	-	2,868	16,002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단지 진입도로

- 위 치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진입부
- 사업내용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진입도로 개설
- 사업기간 : 산업단지 조성시기와 병행(2016년 ~ 2020년)

-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 치 : 삼례폐수종말처리장
- 사업내용 : 고도처리시설 증설(Q=9,000m³/일)
- 사업기간 : 산업단지 조성시기와 병행(2016년 ~ 2020년)

- 용수공급시설

- 위 치 : 완주산업단지 정수장
- 사업내용 : 용수공급시설(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배수지 등) 증설
- 사업기간 : 산업단지 조성시기와 병행(2016년 ~ 2020년)

10. 관련도서 열람 방법

- 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완주군청(미래전략담당관 ☎ 063-29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II. 실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변경없음)

- 법인의 명칭 :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최충식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 16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업종인 자동차/트레일러,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증대하여 신산업생산의 선도적 지역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상업공간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나아가 전북 북부지역의 거점산업기반 마련을 통하여 신성장산업의 기반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음
- 사업의 개요(변경)
 - 사업규모(변경) : (기정)2,110,582.8㎡ → (변경)2,110,582.7㎡
 - 유치업종(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산업 시설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법적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
- 사업면적 : (기정)2,110,582.8㎡(1공구 1,868,913.6㎡, 2공구 241,669.2㎡)
(변경)2,110,582.7㎡(1공구 1,868,913.6㎡, 2공구 180,152.6㎡, 3공구 61,516.5㎡)
 - 산업시설지구 : (기정)1,715,763.7㎡ (1공구 : 1,532,287.4㎡, 2공구 : 183,476.3㎡)
(변경)1,715,763.6㎡ (1공구: 1,532,287.4㎡, 2공구: 121,997.7㎡, 3공구: 61,516.5㎡)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 394,819.1㎡ (1공구 : 336,626.2㎡, 2공구 : 58,192.9㎡)

5. 사업시행 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민관합동개발
- 시행기간 : (기정)2013년 ~ 2023년 06월 30일
(변경)2013년 ~ 2023년 12월 31일
- 1공구 : 2013년 ~ 2021년 12월 31일
- 2공구 : 2013년 ~ 2023년 6월 30일
- 3공구 : 2013년 ~ 2023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6-1.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표(총괄)(변경) >

구분	면적(㎡)								증감 (전체)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2,110,582.8	1,868,913.6	241,669.2	2,110,582.7	1,868,913.6	180,152.6	61,516.5	감)0.1	100.0	88.5	11.5	100.0	88.5	8.6	2.9	
산업시설용지	1,190,443.2	1,152,814.6	37,628.6	1,190,443.2	1,152,814.6	37,628.6	-	-	56.4	54.6	1.8	56.4	54.6	1.8	-	
산업시설	802,072.4	764,443.8	37,628.6	802,072.4	764,443.8	37,628.6	-	-	38.0	36.2	1.8	38.0	36.2	1.8	-	
연구시설	100,219.0	100,219.0	-	100,219.0	100,219.0	-	-	-	4.7	4.7	-	4.7	4.7	-	-	
물류시설	288,151.8	288,151.8	-	288,151.8	288,151.8	-	-	-	13.7	13.7	-	13.7	13.7	-	-	
주거용지	212,843.9	191,859.9	20,984.0	212,843.9	191,859.9	20,984.0	-	-	10.1	9.1	1.0	10.1	9.1	1.0	-	
단독주택	30,064.1	27,161.0	2,903.1	30,064.1	27,161.0	2,903.1	-	-	1.4	1.3	0.1	1.4	1.3	0.1	-	
공동주택	137,951.1	137,951.1	-	137,951.1	137,951.1	-	-	-	6.5	6.5	-	6.5	6.5	-	-	
근린생활시설	19,688.6	13,836.3	5,852.3	19,688.6	13,836.3	5,852.3	-	-	0.9	0.7	0.3	1.0	0.7	0.3	-	
준주거	25,140.1	12,911.5	12,228.6	25,140.1	12,911.5	12,228.6	-	-	1.2	0.6	0.6	1.2	0.6	0.6	-	
지원시설용지	63,122.4	5,867.5	57,254.9	63,122.4	5,867.5	14,623.3	42,631.6	-	3.0	0.3	2.7	3.0	0.3	0.7	2.0	
지원시설	60,750.0	3,495.1	57,254.9	60,750.0	3,495.1	14,623.3	42,631.6	-	2.9	0.2	2.7	2.9	0.2	0.7	2.0	
어린이집	1,184.9	1,184.9	-	1,184.9	1,184.9	-	-	-	0.1	0.1	-	0.1	0.1	-	-	
종교시설	1,187.5	1,187.5	-	1,187.5	1,187.5	-	-	-	0.1	0.1	-	0.1	0.1	-	-	
공공시설용지	644,173.3	518,371.6	125,801.7	644,173.2	518,371.6	106,916.7	18,884.9	감)0.1	30.5	24.5	6.0	30.5	24.5	5.1	0.9	
초등학교	15,129.9	15,129.9	-	15,129.9	15,129.9	-	-	-	0.7	0.7	-	0.7	0.7	-	-	
중학교	15,423.8	15,423.8	-	15,423.8	15,423.8	-	-	-	0.7	0.7	-	0.7	0.7	-	-	
공공청사	2,219.2	2,219.2	-	2,219.2	2,219.2	-	-	-	0.1	0.1	-	0.1	0.1	-	-	
도로	306,618.6	239,286.3	67,332.3	306,527.0	239,329.9	54,563.7	12,633.4	감)91.6	14.5	11.3	3.2	14.5	11.3	2.6	0.6	
보행자도로	3,109.2	818.0	2,291.2	3,155.4	818.0	433.5	1,903.9	증)46.2	0.1	-	0.1	0.1	-	-	0.1	
주차장	25,425.7	12,667.1	12,758.6	25,425.7	12,667.1	8,411.0	4,347.6	-	1.2	0.6	0.6	1.2	0.6	0.4	0.2	
광장	1,390.8	488.5	902.3	1,390.8	488.5	902.3	-	-	0.1	-	-	0.1	-	0.1	-	
저류지	29,250.8	29,250.8	-	29,250.8	29,250.8	-	-	-	1.4	1.4	-	1.4	1.4	-	-	
공원·녹지	245,605.3	203,088.0	42,517.3	245,650.6	203,044.4	42,606.2	-	증)45.3	11.7	9.7	2.0	11.7	9.7	2.0	-	
공원	32,951.8	22,692.7	10,259.1	32,948.5	22,692.7	10,255.8	-	감)3.3	1.6	1.1	0.5	1.6	1.1	0.5	-	
완충녹지	32,942.3	13,819.0	19,123.3	32,942.3	13,819.0	19,123.3	-	-	1.6	0.7	0.9	1.6	0.7	0.9	-	
연결녹지	55,383.7	51,217.3	4,166.4	55,365.6	51,217.3	4,148.3	-	감)18.1	2.6	2.4	0.2	2.6	2.4	0.2	-	
하천	118,516.5	109,548.0	8,968.5	118,626.8	109,548.0	9,078.8	-	증)110.3	5.6	5.2	0.4	5.6	5.2	0.4	-	
공공공지	5,811.0	5,811.0	-	5,767.4	5,767.4	-	-	감)43.6	0.3	0.3	-	0.3	0.3	-	-	

< 산업시설지구(변경) >

구분	면적(m ²)								증감 (천제)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1,715,763.7	1,532,287.4	183,476.3	1,715,763.6	1,532,287.4	121,959.7	61,516.5	감)0.1	100.0	89.3	10.7	100.0	89.3	7.1	3.6	
산업시설용지	1,190,443.2	1,152,814.6	37,628.6	1,190,443.2	1,152,814.6	37,628.6	-	-	69.4	67.2	2.2	69.4	67.2	2.2	-	
산업시설	802,072.4	764,443.8	37,628.6	802,072.4	764,443.8	37,628.6	-	-	46.8	44.6	2.2	46.8	44.6	2.2	-	
연구시설	100,219.0	100,219.0	-	100,219.0	100,219.0	-	-	-	5.8	5.8	-	5.8	5.8	-	-	
물류시설	288,151.8	288,151.8	-	288,151.8	288,151.8	-	-	-	16.8	16.8	-	16.8	16.8	-	-	
지원시설용지	60,750.0	3,495.1	57,254.9	60,750.0	3,495.1	14,623.3	42,631.6	-	3.5	0.2	3.3	3.5	0.2	0.8	2.5	
지원시설	60,750.0	3,495.1	57,254.9	60,750.0	3,495.1	14,623.3	42,631.6	-	3.5	0.2	3.3	3.5	0.2	0.8	2.5	
공공시설용지	464,570.5	375,977.7	88,592.8	464,570.4	375,977.7	69,707.8	18,884.9	감)0.1	27.1	21.9	5.2	27.1	21.9	4.1	1.1	
도로	213,926.9	164,228.1	49,698.8	213,837.9	164,228.1	36,976.4	12,633.4	감)89.0	12.5	9.5	3.0	12.5	9.5	2.2	0.8	
보행자도로	1,903.9	-	1,903.9	1,903.9	-	-	1,903.9	-	0.1	-	0.1	0.1	-	-	0.1	
주차장	18,912.7	8,225.4	10,687.3	18,912.7	8,225.4	6,339.7	4,347.6	-	1.1	0.5	0.6	1.1	0.5	0.4	0.2	
저류지	29,250.8	29,250.8	-	29,250.8	29,250.8	-	-	-	1.7	1.7	-	1.7	1.7	-	-	
공원·녹지	200,576.2	174,273.4	26,302.8	200,665.1	174,273.4	26,391.7	-	증)88.9	11.7	10.2	1.5	11.7	10.2	1.5	-	
공원	13,507.1	9,511.4	3,995.7	13,503.8	9,511.4	3,992.4	-	감)3.3	0.8	0.6	0.2	0.8	0.6	0.2	-	
완충녹지	15,094.0	5,921.8	9,172.2	15,094.0	5,921.8	9,172.2	-	-	0.9	0.3	0.5	0.9	0.3	0.6	-	
연결녹지	53,458.6	49,292.2	4,166.4	53,440.5	49,292.2	4,148.3	-	감)18.1	3.1	2.9	0.3	3.1	2.9	0.2	-	
하천	118,516.5	109,548.0	8,968.5	118,626.8	109,548.0	9,078.8	-	증)110.3	6.9	6.4	0.5	6.9	6.4	0.5	-	

<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변경) >

구분	면적(m ²)							증감 (천제)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계	394,819.1	336,626.2	58,192.9	394,819.1	336,626.2	58,192.9	-	100.0	85.3	14.7	100.0	85.3	14.7		
주거용지	212,843.9	191,859.9	20,984.0	212,843.9	191,859.9	20,984.0	-	53.9	48.6	5.3	53.9	48.6	5.3		
단독주택	30,064.1	27,161.0	2,903.1	30,064.1	27,161.0	2,903.1	-	7.6	6.9	0.7	7.6	6.9	0.7		
공동주택	137,951.1	137,951.1	-	137,951.1	137,951.1	-	-	34.9	34.9	-	34.9	34.9	-		
근린생활시설	19,688.6	13,836.3	5,852.3	19,688.6	13,836.3	5,852.3	-	5.0	3.5	1.5	5.0	3.5	1.5		
준주거	25,140.1	12,911.5	12,228.6	25,140.1	12,911.5	12,228.6	-	6.4	3.3	3.1	6.4	3.3	3.1		
지원시설용지	2,372.4	2,372.4	-	2,372.4	2,372.4	-	-	0.6	0.6	-	0.6	0.6	-		
어린이집	1,184.9	1,184.9	-	1,184.9	1,184.9	-	-	0.3	0.3	-	0.3	0.3	-		
종교시설	1,187.5	1,187.5	-	1,187.5	1,187.5	-	-	0.3	0.3	-	0.3	0.3	-		
공공시설용지	179,602.8	142,393.9	37,208.9	179,602.8	142,393.9	37,208.9	-	45.5	36.1	9.4	45.5	36.1	9.4		
초등학교	15,129.9	15,129.9	-	15,129.9	15,129.9	-	-	3.8	3.8	-	3.8	3.8	-		
중 학교	15,423.8	15,423.8	-	15,423.8	15,423.8	-	-	3.9	3.9	-	3.9	3.9	-		
공공청사	2,219.2	2,219.2	-	2,219.2	2,219.2	-	-	0.6	0.6	-	0.6	0.6	-		
도 로	92,691.7	75,058.2	17,633.5	92,689.1	75,018.8	17,587.3	감)2.6	23.5	19.0	4.5	23.5	19.0	4.5		
보행자도로	1,205.3	818.0	387.3	1,251.5	818.0	433.5	증)46.2	0.3	0.2	0.1	0.3	0.2	0.1		
주 차 장	6,513.0	4,441.7	2,071.3	6,513.0	4,441.7	2,071.3	-	1.6	1.1	0.5	1.6	1.1	0.5		
광 장	1,390.8	488.5	902.3	1,390.8	488.5	902.3	-	0.4	0.1	0.2	0.4	0.2	0.2		
공원·녹지	45,029.1	28,814.6	16,214.5	44,985.5	27,771.0	16,214.5	감)43.6	11.4	7.3	4.1	11.4	7.3	4.1		
공 원	19,444.7	13,181.3	6,263.4	19,444.7	13,181.3	6,263.4	-	4.9	3.3	1.6	4.9	3.3	1.6		
완충녹지	17,848.3	7,897.2	9,951.1	17,848.3	7,897.2	9,951.1	-	4.5	2.0	2.5	4.5	2.0	2.5		
연결녹지	1,925.1	1,925.1	-	1,925.1	1,925.1	-	-	0.5	0.5	-	0.5	0.5	-		
공공공지	5,811.0	5,811.0	-	5,767.4	5,767.4	-	감)43.6	1.5	1.5	-	1.5	1.5	-		

6-2.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증감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21105828	1889136	241,669.2	21105827	1889136	180,152.6	61,516.5	감0.1	100.0	
주거지역	395,456.8	336,626.2	58,830.6	395,456.8	336,626.2	58,830.6	-	-	18.7	
제2종일반주거지역	156,774.6	134,875.5	21,899.1	156,774.6	134,875.5	21,899.1	-	-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74,736.7	171,818.9	2,917.8	174,736.7	171,818.9	2,917.8	-	-	8.3	
준주거지역	63,945.5	29,931.8	34,013.7	63,945.5	29,931.8	34,013.7	-	-	3.0	
공업지역	1,715,126.0	1,532,287.4	182,838.6	1,715,125.9	1,532,287.4	121,322.0	61,516.5	감0.1	81.3	
일반공업지역	1,594,017.7	1,532,287.4	62,114.3	1,594,017.7	1,532,287.4	62,114.3	-	-	75.5	
준공업지역	120,724.3	-	120,724.3	120,724.2	-	59,207.7	61,516.5	감0.1	5.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일원	준공업지역	120,724.3	-	120,724.3	120,724.2	-	59,207.7	61,516.5	400%	·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및 공구분할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일원	1,715,763.7	감)0.1	1,715,763.6	-
2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지구 (미니복합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용암리 일원	394,819.1	-	394,819.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일원	· 면적 정정 - 1,715,763.7㎡ → 1,715,763.6㎡ (감0.1㎡)	·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변경)

① 산업시설지구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계	기정	32	10,361	215,830.8	9	3,546	60,856.3	7	3,416	75,891.7	16	3,399	79,082.8	
		증감	-	-	감)89.0	-	-	감)88.9	-	-	감)0.1	-	-	-	
		변경	32	10,361	215,741.8	9	3,546	60,767.4	7	3,416	75,891.6	16	3,399	79,082.8	
	1공구	기정	15	7,124	164,228.1	8	2,308	46,504.3	4	2,467	52,854.6	3	2,349	64,869.2	
		증감	-	-	-	-	-	-	-	-	-	-	-	-	
		변경	15	7,124	164,228.1	8	2,308	46,504.3	4	2,467	52,854.6	3	2,349	64,869.2	
	2공구	기정	17	3,237	51,602.7	1	1,238	14,352.0	3	949	23,037.1	13	1,050	14,213.6	
		증감	감)13	감)1204	감)146363	-	감)91	감)289.7	감)2	감)429	감)7,085.1	감)11	감)684	감)7,251.5	
		변경	4	2,033	36,976.4	1	1,147	14,062.3	1	520	15,952.0	2	366	6,962.1	
	3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증)13	증)1204	증)145373	-	증)91	증)200.8	증)2	증)429	증)7,085.0	증)11	증)684	증)7,251.5	
		변경	13	1,204	14,537.3	-	91	200.8	2	429	7,085.0	11	684	7,251.5	
대로	소계	기정	5	4,314	108,258.0	1	802	1,408.6	1	1,027	37,988.3	3	2,485	68,861.1	
		증감	-	-	감)88.9	-	-	감)88.9	-	-	-	-	-	-	
		변경	5	4,314	108,169.1	1	802	1,319.7	1	1,027	37,988.3	3	2,485	68,861.1	
	1공구	기정	4	3,258	91,420.2	1	182	466.3	1	737	26,225.3	2	2,339	64,728.6	
		증감	-	-	-	-	-	-	-	-	-	-	-	-	
		변경	4	3,258	91,420.2	1	182	466.3	1	737	26,225.3	2	2,339	64,728.6	
	2공구	기정	1	1,056	16,837.8	-	620	942.3	-	290	11,763.0	1	146	4,132.5	
		증감	-	감)91	감)289.7	-	감)91	감)289.7	-	-	-	-	-	-	
		변경	1	965	16,548.1	-	529	652.6	-	290	11,763.0	1	146	4,132.5	
	3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	증)91	증)200.8	-	증)91	증)200.8	-	-	-	-	-	-	
		변경	-	91	200.8	-	91	200.8	-	-	-	-	-	-	
중로	소계	기정	15	5,292	100,611.2	4	2,274	54,390.0	6	2,389	37,903.4	5	629	8,317.8	
		증감	-	-	감)0.1	-	-	-	-	-	감)0.1	-	-	-	
		변경	15	5,292	100,611.1	4	2,274	54,390.0	6	2,389	37,903.3	5	629	8,317.8	
	1공구	기정	7	3,396	67,750.2	3	1,656	40,980.3	3	1,730	26,629.3	1	10	140.6	
		증감	-	-	-	-	-	-	-	-	-	-	-	-	
		변경	7	3,396	67,750.2	3	1,656	40,980.3	3	1,730	26,629.3	1	10	140.6	
	2공구	기정	8	1,896	32,861.0	1	618	13,409.7	3	659	11,274.1	4	619	8,177.2	
		증감	감)5	감)828	감)12,432.7	-	-	-	-	감)2	감)429	감)7,085.1	감)3	감)399	감)5,347.6
		변경	3	1,068	20,428.3	1	618	13,409.7	1	230	4,189.0	1	220	2,829.6	
	3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증)5	증)828	증)12,432.6	-	-	-	증)2	증)429	증)7,085.0	증)3	증)399	증)5,347.6	
		변경	5	828	12,432.6	-	-	-	2	429	7,085.0	3	399	5,347.6	
소로	소계	기정	12	755	6,961.6	4	470	5,057.7	-	-	-	8	285	1,903.9	
		증감	-	-	-	-	-	-	-	-	-	-	-	-	
		변경	12	755	6,961.6	4	470	5,057.7	-	-	-	8	285	1,903.9	
	1공구	기정	4	470	5,057.7	4	470	5,057.7	-	-	-	-	-	-	
		증감	-	-	-	-	-	-	-	-	-	-	-	-	
		변경	4	470	5,057.7	4	470	5,057.7	-	-	-	-	-	-	
	2공구	기정	8	285	1,903.9	-	-	-	-	-	-	8	285	1,903.9	
		증감	감)8	감)285	감)1,903.9	-	-	-	-	-	-	감)8	감)285	감)1,903.9	
		변경	-	-	-	-	-	-	-	-	-	-	-	-	
	3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증)8	증)285	증)1,903.9	-	-	-	-	-	-	증)8	증)285	증)1,903.9	
		변경	8	285	1,903.9	-	-	-	-	-	-	8	285	1,903.9	

* 공구분할에 따라 구분되는 대로 1-1호선, 대로2-1호선은 1공구에 반영하여 1개소로 산정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802						
기정	대로	1	1	35~38	주간선	7,553 (802)	대로1-2	봉동읍 제내리 구역계	일반	과학산업 연구단지	전라북도고시 제135호 (78.5.22)	산업시설지구, 1공구(182m) 2공구(529m) 3공구(91m)
소 계						1,027						
기정	대로	2	1	34.5	주간선	1,027	중로1-3	대로1-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73m) 2공구(290m)
소 계						2,485						
기정	대로	3	1	27.5	보조간선	1,856	장구리 699도	대로2-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대로	3	2	27.5	보조간선	483	대로2-1	제내리 1291천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대로	3	3	25.5 ~29	집산도로	146	제내리 298-1대	제내리 314-2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2공구
소 계						2,274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376	둔산리 1144도	중로1-2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997	중로1-1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1	3	22	집산도로	283	제내리 1289천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1	4	22	집산도로	618	제내리 255-2구	제내리 834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2공구
소 계						2,389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964	중로1-1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89	중로2-1	중로1-2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577	대로3-1	중로1-3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7	16	국지도로	237	제내리 792답	제내리 370-7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2공구(72m) 3공구(165m)
기정	중로	2	8	19.5	국지도로	157	제내리 370-3답	제내리 370-7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2공구
기정	중로	2	9	16	국지도로	265	제내리 371-1답	제내리 300-1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소 계						629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0	장구리 684유	중로1-2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	12	국지도로	220	제내리 298-2대	제내리 263-4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2공구
기정	중로	3	11	12	국지도로	290	제내리 350-8답	제내리 348-27전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42	제내리 382-4대	제내리 385대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67	제내리 382-6답	제내리 832답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소 계						47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67	장구리 649장	중로1-2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0	장구리 620장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0	장구리 616장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03	제내리 1239장	대로3-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산업시설지구, 1공구
소 계						767						
기정	소로	2	68	8	국지도로	767	구암리 738-3도	소로1-27	일반		완주군고시 제2012-60호 (12.07.20)	지구 외 도로
소 계						285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4	제내리 373전	제내리 372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41	제내리 348-78전	제내리 348-71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30	제내리 371-2답	제내리 371-1답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66	제내리 350-8답	제내리 348-11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62	제내리 348-27전	제내리 348-13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30	제내리 303-8전	제내리 305-5대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12	제내리 310대	제내리 310대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30	제내리 산112입	제내리 348-12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산업시설지구, 3공구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912.7	-	18,912.7		
기정	주1	주차장	제내리 831-1답	2,247.4	-	2,247.4	전라북도고시 체2016-191호 (16.09.19)	3공구
기정	주2	주차장	제내리 1240차	3,540.9	-	3,540.9	전라북도고시 체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3	주차장	장구리 633차	1,799.3	-	1,799.3	전라북도고시 체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4	주차장	장구리 665차	722.4	-	722.4	전라북도고시 체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5	주차장	장구리 670차 일원	2,162.8	-	2,162.8	전라북도고시 체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12	주차장	제내리 348-11전	2,100.2	-	2,100.2	전라북도고시 체2021-119호 (21.04.23)	3공구
기정	주13	주차장	제내리 315-2답	1,766.8	-	1,766.8	전라북도고시 체2021-119호 (21.04.23)	2공구
기정	주14	주차장	제내리 379-1답	4,572.9	-	4,572.9	전라북도고시 체2021-119호 (21.04.23)	2공구

○ 공간시설계획(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13,507.1	감)3.3	13,503.8		
기정	소1	1호 소공원	소공원	제내리 1256공	3,942.7	-	3,942.7	전라북도고시 체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2	2호 소공원	소공원	장구리 660공	1,167.8	-	1,167.8	전라북도고시 체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3	3호 소공원	소공원	장구리 671공	4,400.9	-	4,400.9	전라북도고시 체2016-191호 (16.09.19)	1공구
변경	소7	7호 소공원	소공원	제내리 370-7답	3,995.7	감)3.3	3,992.4	전라북도고시 체2021-119호 (21.04.23)	2공구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7	소공원	·면적 정정 - 3,995.7m ² → 3,992.4m ² (감3.3m ²)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제1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942.7	613.0			
도로 및 광장		소 계		613.0	613.0			15.55%
		도로	전지역	330.0	330.0			
	가-1	중앙광장	부지 남동측	283.0	283.0			원형과고라1개소 평의자 6개소
녹지		녹지	전지역	3,329.7				84.45% 등의자 6개소 평의자 4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40	330				
소로	3	1	3.0	80	240	진입로	북측 출입구	중앙광장	
소로	3	2	1.5	60	90	진입로	남측 출입구	중앙광장	

㉡ 제2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67.8	230.0			
도로 및 광장		소 계		190.0	190.0			19.70%
		도로	전지역	75.0	75.0			
	가-1	휴게광장	부지중앙	115.0	115.0			
조경 시설		소 계		40.0	40.0			
	나-1	화계	부지동측	24.0	24.0			
	나-2	사각과고라	부지중앙	16.0	16.0			
녹지		녹지	전지역	937.8				80.30%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38	75				
소로	3	1	3.0	12	36	진입로	북측 출입구	휴게광장	
소로	3	2	1.5	26	39	진입로	휴게광장	북측 출입구	

㉔ 제3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4,400.9	759.0			
도로 및 광장		소 계		759.0	759.0			17.25%
		도로	전지역	478.0	478.0			
	가-1	휴게광장	부지중앙	281.0	281.0			사각과고라2개소
녹지		녹지	전지역	3,641.9				82.75% 등의자8개소 평의자4개소 체련단련시설5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24	478				
소로	3	1	5.0	36	169	진입로	남서측 출입구	휴게광장	
소로	3	2	3.0	20	57	진입로	휴게광장	남동측 출입구	
소로	3	3	1.5	118	177	산책로	소로3-1	소로3-2	
소로	3	4	1.5	50	75	산책로	소로3-2	소로3-1	

㉕ 제7호 소공원(변경)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995.7	감)3.3	3,992.4	495.0			
도로 및 광장		소 계		460.0	-	460.0	460.0			11.52%
		도로	전지역	203.0	-	203.0	203.0			11.52%
	가-1	진입광장	부지북동측	25.0	-	25.0	25.0			
	가-2	진입광장	부지남동측	92.0	-	92.0	92.0			
	가-3	진입광장	부지동측	57.0	-	57.0	57.0			
	가-4	진입광장	부지남측	36.0	-	36.0	36.0			
운동시설		소계		35.0	-	35.0	35.0			0.88
	나-1	운동공간	부지중앙	35.0	-	35.0	35.0			체력단련시설 4개소
녹지		녹지	전지역	3,500.7	감)3.3	3,497.4				87.60% 등의자 10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01	203				
소로	3	1	2.0	39	78	진입로	북동측 출입구	남동측 출입구	
소로	3	2	2.0	62	125	진입로	동측 출입구	남측 출입구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53,458.6	감)18.1	53,440.5		
기정	연1	녹지	연결녹지	체내리 1245공	1,079.5	-	1,079.5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변경	연2	녹지	연결녹지	장구리 687공 일원	27,802.5	감)18.1	27,784.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25,924.1m ²) 2공구 (1,860.3m ²)
기정	연3	녹지	연결녹지	체내리 1280공 일원	13,365.0	-	13,365.0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연4	녹지	연결녹지	장구리 619공 일원	3,050.7	-	3,050.7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연5	녹지	연결녹지	체내리 1284공 일원	8,160.9	-	8,160.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5,872.9m ²) 2공구 (2,288.0m ²)
소 계					15,094.0	-	15,094.0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장구리 산29임	9,172.2	-	9,172.2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2공구
기정	완3	녹지	완충녹지	장구리 682공 일원	5,921.8	-	5,921.8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연2	연결녹지	·면적 정정 - 27,802.5m ² → 27,784.4m ² (감18.1m ²)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방재시설계획(변경)

1) 하천(변경)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m)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4	석탑천	지방 하천	봉동읍 체내리 584-1번지선	삼례읍 석전리우산천 (지방) 합류점		8.85 (2.95)	10~60	333,060 (110,707.2)	완주군고시 제2012-60호 (2012.7.20.)	333,060 (110,707.2)

*()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연장, 면적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4	석탑천	·하천면적 : 333,060m ² (변경없음) - 산업단지 편입면적 : 110,596.9m ² → 110,707.2m ² (증110.3m ²)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내 하천 면적 정정

2)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250.8	-	29,250.8		
기정	저1	유수지	저류시설	제내리 1261유	11,073.9	-	11,073.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저2	유수지	저류시설	장구리 684유 일원	18,176.9	-	18,176.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1) 산업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	산업1	산업1	37,628.6	37,628.6	-1	-1	37,628.6	37,628.6	(2공구)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최소획지규모 1,650m ²)
	산업2	산업2	73,503.0	73,503.0	-1	-1	2,753.0	2,753.0	
					-2	-2	8,332.0	8,332.0	
					-3	-3	9,614.0	9,614.0	
					-4	-4	9,597.0	9,597.0	
					-5	-5	10,240.0	10,240.0	
					-6	-6	10,410.0	10,410.0	
					-7	-7	7,548.0	7,548.0	
					-8	-8	8,685.8	8,685.8	
	-9	-9	6,323.2	6,323.2					
	산업4	산업4	29,886.1	29,886.1	-1	-1	13,966.7	13,966.7	
					-2	-2	15,919.4	15,919.4	
	산업5	산업5	41,467.8	41,467.8	-1	-1	12,095.1	12,095.1	
					-2	-2	18,482.3	18,482.3	
	산업6	산업6	80,825.3	80,825.3	-3	-3	10,890.4	10,890.4	
					-1	-1	10,436.0	10,436.0	
	산업7	산업7	106,006.6	106,006.6	-2	-2	11,041.2	11,041.2	
					-3	-3	12,069.9	12,069.9	
	산업8	산업8	93,200.9	93,200.9	-4	-4	14,603.5	14,603.5	
					-5	-5	17,008.3	17,008.3	
산업9	산업9	96,054.8	96,054.8	-1	-1	12,509.8	12,509.8		
				-2	-2	20,703.4	20,703.4		
산업10	산업10	82,572.0	82,572.0	-3	-3	53,960.7	53,960.7		
				-4	-4	18,832.7	18,832.7		
산업9	산업9	96,054.8	96,054.8	-1	-1	7,299.3	7,299.3		
				-2	-2	10,731.5	10,731.5		
산업8	산업8	93,200.9	93,200.9	-3	-3	14,537.0	14,537.0		
				-4	-4	9,198.9	9,198.9		
산업7	산업7	106,006.6	106,006.6	-5	-5	10,800.2	10,800.2		
				-6	-6	10,432.5	10,432.5		
산업6	산업6	80,825.3	80,825.3	-7	-7	8,810.8	8,810.8		
				-8	-8	9,218.8	9,218.8		
산업5	산업5	41,467.8	41,467.8	-9	-9	12,171.9	12,171.9		
				-1	-1	31,054.8	31,054.8		
산업4	산업4	29,886.1	29,886.1	-2	-2	65,000.0	65,000.0		
				-1	-1	7,913.4	7,913.4		
산업3	산업3	73,503.0	73,503.0	-2	-2	11,869.6	11,869.6		
				-3	-3	10,755.2	10,755.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	-4	10,480.6	10,480.6	
					-5	-5	8,446.4	8,446.4	
					-6	-6	11,918.8	11,918.8	
					-7	-7	10,672.9	10,672.9	
					-8	-8	10,515.1	10,515.1	
	산업11	산업11	43,485.0	43,485.0	-1	-1	9,678.6	9,678.6	
					-2	-2	14,503.9	14,503.9	
					-3	-3	11,324.7	11,324.7	
					-4	-4	7,977.8	7,977.8	
	산업12	산업12	73,293.0	73,293.0	-1	-1	12,848.8	12,848.8	
					-2	-2	11,394.1	11,394.1	
					-3	-3	10,115.1	10,115.1	
					-4	-4	13,047.6	13,047.6	
-5					-5	11,392.0	11,392.0		
산업13	산업13	44,149.3	44,149.3	-1	-1	5,478.0	5,478.0		
				-2	-2	3,300.0	3,300.0		
				-3	-3	18,180.1	18,180.1		
				-4	-4	17,191.2	17,191.2		

2) 연구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	연구1	연구1	59,729.1	59,729.1	-1	-1	5,797.9	5,797.9	(1공구)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최소획지규모 1,650m ²)
					-2	-2	6,644.9	6,644.9	
					-3	-3	6,534.4	6,534.4	
					-4	-4	4,330.1	4,330.1	
					-5	-5	4,532.0	4,532.0	
					-6	-6	8,282.3	8,282.3	
					-7	-7	5,525.0	5,525.0	
					-8	-8	6,953.6	6,953.6	
					-9	-9	11,128.9	11,128.9	
	연구2	연구2	40,489.9	40,489.9	-1	-1	6,931.1	6,931.1	
					-2	-2	6,858.9	6,858.9	
					-3	-3	14,537.7	14,537.7	
					-4	-4	12,162.2	12,162.2	

3) 물류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	물류1	물류1	142,335.6	142,335.6	-1	-1	142,335.6	142,335.6	(1공구)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최소획지규모 1,650m ²)
	물류2	물류2	145,816.2	145,816.2	-2	-2	145,816.2	145,816.2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1) 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	지원1	지원1	9,244.7	9,244.7	-1	-1	1,593.1	1,593.1	(3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2,137.7	2,137.7	
					-3	-3	1,411.2	1,411.2	
					-4	-4	1,144.9	1,144.9	
					-5	-5	1,697.9	1,697.9	
	지원2	지원2	2,131.0	2,131.0	-1	-1	1,065.6	1,065.6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1,065.4	1,065.4	
	지원3	지원3	1,364.1	1,364.1	-1	-1	682.1	682.1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682.0	682.0	
	지원4	지원4	6,432.7	6,432.7	-1	-1	1,233.9	1,233.9	(3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1,223.1	1,223.1	
					-3	-3	1,916.5	1,916.5	
					-4	-4	644.6	644.6	
					-5	-5	747.5	747.5	
	지원5	지원5	10,550.6	10,550.6	-6	-6	667.1	667.1	(3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1	-1	1,668.0	1,668.0	
					-2	-2	993.3	993.3	
					-3	-3	1,010.1	1,010.1	
					-4	-4	1,006.9	1,006.9	
					-5	-5	1,012.5	1,012.5	
					-6	-6	1,046.8	1,046.8	
					-7	-7	1,045.3	1,045.3	
					-8	-8	984.9	984.9	
					-9	-9	924.4	924.4	
	지원6	지원6	6,603.3	6,603.3	-10	-10	858.4	858.4	(3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1	-1	659.7	659.7	
					-2	-2	596.2	596.2	
					-3	-3	619.5	619.5	
					-4	-4	588.8	588.8	
					-5	-5	550.9	550.9	
					-6	-6	542.0	542.0	
					-7	-7	483.8	483.8	
					-8	-8	484.1	484.1	
					-9	-9	472.1	472.1	
					-10	-10	529.7	529.7	
					-11	-11	544.4	544.4	
					-12	-12	532.1	532.1	
	지원7	지원7	9,800.3	9,800.3	-1	-1	719.7	719.7	(3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657.0	657.0	
					-3	-3	660.6	660.6	
					-4	-4	648.4	648.4	
					-5	-5	710.2	710.2	
					-6	-6	708.7	708.7	
					-7	-7	705.8	705.8	
					-8	-8	586.9	586.9	
-9					-9	577.6	577.6		
-10					-10	579.3	579.3		
-11					-11	571.5	571.5		
-12					-12	621.2	621.2		
-13					-13	658.6	658.6		
-14					-14	653.7	653.7		
-15					-15	741.1	741.1		
지원8	지원8	11,157.7	11,157.7	-1	-1	5,880.3	5,880.3	(2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5,277.4	5,277.4		
지원9	지원9	3,465.6	3,465.6	-1	-1	773.1	773.1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931.2	931.2		
				-3	-3	940.8	940.8		
				-4	-4	820.5	820.5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1) 산업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1~2 4~13BL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교육원, 마.연구소 (단, 주요 유치업종계획에 따른 부수적 용도로 허용)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건축물의 주방향은 도로 전면부 또는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3류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3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중로 1류 이하 도로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전면도로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색 채	주조색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은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강조색	○ 제한없음		

2) 연구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1 ~2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주방향은 도로 전면부 또는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건축선	○ 대로 3류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3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중로 1류 이하 도로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전면도로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색 채	주조색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은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강조색	○ 제한없음		

3) 물류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물류 1~2BL	용 도	○ 허용용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물류시설 및 7호의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용도에 한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제2항 1호의 부대시설 및 2호의 편익시설 - 다만, 완주군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주방향은 도로 전면부 또는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건축선	○ 대로 3류 이상 도로 : 건축한계선 3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전면도로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색 채	주조색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은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강조색	○ 제한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	지원 1~9B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는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하 (지원2~3,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지원1,4~9, 준공업지역)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 이하 (지원2~3, 일반공업지역) ○ 400% 이하 (지원1,4~9, 준공업지역)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층 이하 (단, 지원8는 10층 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3-1호선변에 건축한계선 1.5m 지정(지원2,3) ○ 건축한계선 2m 지정 (지원1, 4~7, 9) ○ 건축한계선 3m 지정 (지원8)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한함)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등 여건상 부득이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장방형으로 길고, 입면적이 넓은 경우, 과도한 건물메트로 인한 경관차폐, 바람길 차단, 위압감 완화를 위하여 장방형 건축물은 25m 이내로 경관형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적인 외벽선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돌출, 재질 변화, 다양한 창호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입면 분절을 권장한다. - 석담천, 소공원 등 자연경관자원에 인접한 건축물의 경우 휴먼스케일로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재질(목재 및 석재의 재질표현)등의 소재를 가로변 또는 중·원경에서 가시되는 상층부 부분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원용지 6,7블록 내 보행자도로에 접한 필지는 1층 업소에 한해 차양막 설치를 권장한다. 차양막 설치시 한 건축물 내 차양막은 같은 형태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차양막의 색상은 인접 업소의 색채와 유사하게 설치한다. ○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전면보도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등), 굴뚝, 환기설비,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건축물의 전면부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 도시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옥상면적의 50% 이상)를 권장한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높이차에 의한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				
		지원 2~3	지원4	지원 1,5,9	지원 6~7	지원8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4.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	○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6. 종교시설(불안당 제외)	×	×	○	○	×
	7. 판매시설 (지원2,3의 경우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	○	○	○	○	○
	9.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	○	○	○
	10.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	○	×	●
	11.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	×	○	○
	13.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	○	○	○
	14. 업무시설	○	○	●	○	○
	15.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지원4에 한함), 관광숙박시설(지원8에 한함)	×	○	×	×	●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	×	×	×	×
	20.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마목 매매장	○	○	○	×	×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제외), 이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 ● : 권장용도 / ○ : 허용용도 / × : 불허용도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2 조성기준' 준수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구간내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완주군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
		옥외광고물	○ '별표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2) 공통(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	야간경관	○ '별표5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기타시설물 경관	○ 도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19)을 준수

② 지원시설지구(미니복합타운)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계	기정	37	6,389	93,897.0	11	3,087	54,954.6	3	406	7,014.0	23	2,896	31,928.4	
		증감	-	-	증)43.6	-	-	감)2.6	-	-	-	-	-	증)46.2	
		변경	37	6,389	93,940.6	11	3,087	54,952.0	3	406	7,014.0	23	2,896	31,974.6	
	1공구	기정	29	5,005	75,876.2	10	2,395	44,900.6	3	406	7,014.0	16	2,204	23,961.6	
		증감	-	-	증)43.6	-	-	증)43.6	-	-	-	-	-	-	
		변경	29	5,005	75,919.8	10	2,395	44,944.2	3	406	7,014.0	16	2,204	23,961.6	
	2공구	기정	8	1,384	18,020.8	1	692	10,054.0	-	-	-	7	692	7,966.8	
		증감	-	-	-	-	-	감)46.2	-	-	-	-	-	증)46.2	
		변경	8	1,384	18,020.8	1	692	10,007.8	-	-	-	7	692	8,013.0	
	대로	소계	기정	1	106	433.6	1	106	433.6	-	-	-	-	-	-
			증감	-	-	-	-	-	-	-	-	-	-	-	-
			변경	1	106	433.6	1	106	433.6	-	-	-	-	-	-
1공구		기정	-	-	-	-	-	-	-	-	-	-	-	-	
		증감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2공구		기정	1	106	433.6	1	106	433.6	-	-	-	-	-	-	
		증감	-	-	-	-	-	-	-	-	-	-	-	-	
		변경	1	106	433.6	1	106	433.6	-	-	-	-	-	-	
중로		소계	기정	16	4,056	72,028.1	3	1,504	38,351.7	3	406	7,014.0	10	2,146	26,662.4
			증감	-	-	-	-	-	-	-	-	-	-	-	-
			변경	16	4,056	72,028.1	3	1,504	38,351.7	3	406	7,014.0	10	2,146	26,662.4
	1공구	기정	13	3,237	58,794.6	3	1,305	32,697.7	3	406	7,014.0	7	1,526	19,082.9	
		증감	-	-	-	-	-	-	-	-	-	-	-	-	
		변경	13	3,237	58,794.6	3	1,305	32,697.7	3	406	7,014.0	7	1,526	19,082.9	
	2공구	기정	3	819	13,233.5	-	199	5,654.0	-	-	-	3	620	7,579.5	
		증감	-	-	-	-	-	-	-	-	-	-	-	-	
		변경	3	819	13,233.5	-	199	5,654.0	-	-	-	3	620	7,579.5	
	소로	소계	기정	20	2,227	21,435.3	7	1,477	16,169.3	-	-	-	13	750	5,266.0
			증감	-	-	증)43.6	-	-	감)2.6	-	-	-	-	-	증)46.2
			변경	20	2,227	21,478.9	7	1,477	16,166.7	-	-	-	13	750	5,312.2
1공구		기정	16	1,768	17,081.6	7	1,090	12,202.9	-	-	-	9	678	4,878.7	
		증감	-	-	증)43.6	-	-	증)43.6	-	-	-	-	-	-	
		변경	16	1,768	17,125.2	7	1,090	12,246.5	-	-	-	9	678	4,878.7	
2공구		기정	4	459	4,353.7	-	387	3,966.4	-	-	-	4	72	387.3	
		증감	-	-	-	-	-	감)46.2	-	-	-	-	-	증)46.2	
		변경	4	459	4,353.7	-	387	3,920.2	-	-	-	4	72	433.5	

* 공구분할에 따라 구분되는 중로-5호선 중로 3-9호선 소로-10호선 소로-11호선은 1공구에 반영하여 1개소로 선정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106						
기정	대로	1	1	35~40	주간선	7,553 (106)	대로1-2	봉동읍 제내리 구역계	일반	과학산업 연구단지	전고 제135호 (78.5.22)	()안은 지원시설지구, 2공구
소 계						1,504						
기정	중로	1	5	22~24	보조간선	1,032	둔산리 산70-12입	대로1-1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833m), 2공구(199m)
기정	중로	1	6	24	집산도로	363	소로3-1	중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1	7	21	집산도로	109	중로1-5	중로3-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소 계						406						
기정	중로	2	4	18	집산도로	237	중로3-4	중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68	중로2-4	중로3-7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01	중로1-5	소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소 계						2,146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284	소로3-1	중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470	중로1-5	중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109	중로1-5	중로3-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116	중로3-4	중로2-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456	중로3-4	중로2-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69	중로2-5	중로3-7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중로	3	9	12	국지도로	571	중로3-3	둔산리 223-7잡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22m), 2공구(549m)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28	용암리 산39-4입	용암리 산39-4입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중로	3	14	12	국지도로	22	용암리 산39-4입	용암리 산39-4입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21	둔산리 산68-4입	둔산리 산68-4입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소 계						1,477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95	소로3-1	중로2-6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92	소로1-7	중로3-4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94	중로3-4	소로1-6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78	중로3-4	중로3-7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13	중로3-4	중로3-6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91	중로3-4	둔산리 산68-2입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18m) 2공구(73m)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14	소로1-10	소로1-10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소 계						750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71	중로3-3	소로1-5	일반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24	중로1-5	소로1-6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33	소로1-6	소로1-7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33	소로1-7	중로3-4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36	중로3-7	소로1-8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6	4	특수도로	18	소로1-8	둔산리 1013공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7	4	특수도로	20	중로3-7	둔산리 1141공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8	4	특수도로	23	중로3-7	중로1-5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20	중로3-4	소로1-6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1공구
기정	소로	3	18	4	특수도로	10	둔산리 322-50전	둔산리 322-50전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소로	3	19	4	특수도로	25	둔산리 223-7잡	둔산리 223-7잡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소로	3	20	4	특수도로	25	둔산리 223-7잡	둔산리 223-7잡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기정	소로	3	21	4	특수도로	12	둔산리 322-50전	둔산리 산70입	보행자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지원시설지구, 2공구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8	소로1-8	· 도로경계 정정	· 공공공지2와 소로1-8호선 일원의 시공상 오류사항 정정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513.0	-	6,513.0		
기정	주6	주차장	둔산리 957차	1,102.3	-	1,102.3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7	주차장	둔산리 999차	1,069.9	-	1,069.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8	주차장	둔산리 1052차	1,243.3	-	1,243.3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9	주차장	둔산리 1079차	1,026.2	-	1,026.2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주10	주차장	둔산리 산68-2입	1,083.1	-	1,083.1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2공구
기정	주11	주차장	용암리 산39-4입	988.2	-	988.2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2공구

○ 공간시설계획(변경)

1)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봉동읍 둔산리 1142공 일원	81,317 (1,390.8)	-	81,317 (1,390.8)	전·고제215호 (86.12.15)	봉동읍, 1공구 (488.5m ²) 2공구 (902.3m ²)

*()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면적임

2)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19,444.7	-	19,444.7		
기정	근공1	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둔산리 1045공	11,678.4	-	11,678.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4	4호 소공원	소공원	둔산리 1012공	964.6	-	964.6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소5	5호 소공원	소공원	용암리 918공 일원	538.3	-	538.3	전라북도고시 제2021-119호 (21.04.23)	1공구
기정	소6	6호 소공원	소공원	둔산리 221-11전	6,263.4	-	6,263.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2공구

-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 ④ 제1호 근린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678.4	4,066.0			
도로 및 광장		소계		3,548.0	3,548.0			30.38%
		도로	전지역	2,099.0	2,099.0			평의자4개소
	가-1	진입과장2	부지북동측	478.0	478.0			등의자4개소
	가-2	휴게광장1	부지북측	307.0	307.0			사각파고라2개소 반원형파고라1개소
	가-3	중앙광장	부지중앙	346.0	346.0			등의자 6개소, 평의자 2개소
	가-4	휴게광장2	부지중앙	76.0	76.0			육각정자1개소 등의자4개소
	가-5	진입광장3	부지남측	242.0	242.0			
운동시설		소계		98.0	98.0			0.84%
	나-1	체력단련장	부지중앙	98.0	98.0			체력단련시설 5개소
유희시설		소계		370.0	370.0			3.17%
	다-1	어린이놀이터	부지중앙	370.0	370.0			
편의시설		소계		50.0	50.0			0.43%
	라-1	화장실	부지중앙	50.0	50.0			
녹지		녹지	전지역	7,612.4				65.18% 등의자 6개소 평의자 8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515	2,099				
소로	3	1	5	131	680	산책로	진입광장1	중앙광장	
소로	3	2	5	15	75	진입로	진입광장2	중앙광장	
소로	3	3	3	3	9	진입로	소로3-2	화장실	
소로	3	4	5	177	887	산책로	중앙광장	진입광장3	
소로	3	5	3	7	21	진입로	동측 출입구	소로3-4	
소로	3	6	3	9	28	진입로	소로3-4	소로3-7	
소로	3	7	1.5	84	126	산책로	소로3-4	소로3-4	
소로	3	8	1.2	12	17	산책로	소로3-4	소로3-7	
소로	3	9	1.2	9	12	산책로	소로3-4	소로3-7	
소로	3	10	1.2	9	12	산책로	소로3-4	소로3-7	
소로	3	11	3	29	86	산책로	보도	도로	
소로	3	12	4	18	76	산책로	보도	도로	
소로	3	13	3	12	70	산책로	소로3-4	도로	

㉠ 제4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64.6	192.0			
도로 및 광장		소계		192.0	192.0			19.90%
		도로	전지역	176.0	176.0			
	가-1	휴게광장	부지중앙	16.0	16.0			사각파고라1개소
녹지		녹지	전지역	772.6				80.10% 등의자2개소 평의자6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95	176				
소로	3	1	2.0	56	111	산책로	북서측 출입구	남측 출입구	
소로	3	2	1.5	32	52	산책로	소로3-1	소로3-1	
소로	3	3	2.0	7	13	진입로	북동측 출입구	소로3-2	

㉡ 제5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538.3	-	538.3	74.0			
도로 및 광장		소계		74.0	-	74.0	74.0			13.75%
		도로	전지역	74.0	-	74.0	74.0			
교양	1	고인돌			-					1개소(현존)
	2	고인돌			-					1개소(현존)
녹지		녹지	전지역	464.3	-	464.3				86.25%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합계				21	74				
기정	소로	3	1	4	12	52	진입로	외부	외부	
기정	소로	3	2	2.5	9	22	진입로	외부	외부	

라 제6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6,263.4	-	6,263.4	1,043.0			
도로 및 광장		소계		1,043.0	-	1,043.0	1,043.0			16.65%
	-	도로	전지역	699.0	-	699.0	699.0			평의자 8개소
	가-1	휴게광장1	부지중앙	49.0	-	49.0	49.0			육각정자1개소
	가-2	진입광장1	부지북서측	105.0	-	105.0	105.0			
	가-3	휴게광장2	부지중앙	50.0	-	50.0	50.0			육각정자1개소
	가-4	진입광장2	부지북서측	56.0	-	56.0	56.0			
	가-5	진입광장3	부지북서측	70.0	-	70.0	70.0			
가-6	진입광장4	부지북서측	14.0	-	14.0	14.0				
녹지		녹지	전지역	5,220.4	-	5,220.4				83.35% 등의자4개소 평의자8개소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34	699				
소로	3	1	3	65	194	산책로	외부	외부	
소로	3	2	5	49	265	산책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1	
소로	3	3	2	72	144	산책로	진입광장3	진입광장2	
소로	3	4	2	3	7	산책로	외부	소로3-3	
소로	3	5	2	45	89	산책로	진입광장4	완충녹지	

3)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1,925.1	-	1,925.1		
기정	연6	녹지	연결녹지	둔산리 1130공	1,925.1	-	1,925.1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소 계					17,848.3	-	17,848.3		
기정	완4	녹지	완충녹지	둔산리 1140공	5,860.9	-	5,860.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완5	녹지	완충녹지	둔산리 1141공	2,036.3	-	2,036.3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완6	녹지	완충녹지	둔산리 산69임	9,951.1	-	9,951.1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2공구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811.0	감)43.6	5,767.4		
기정	지1	공공공지	둔산리 1046공 일원	1,890.4	-	1,890.4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변경	지2	공공공지	둔산리 1013공 일원	1,399.6	감)43.6	1,356.0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지3	공공공지	둔산리 1127공 일원	2,521.0	-	2,521.0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지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경계 정정 - 1,399.6m ² → 1,356.0m ² (감43.6m ²)	· 공공공지2와 소로1-8호선 일원의 시공상 오류사항 정정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553.7	-	30,553.7		
기정	학1	학교	중학교	둔산리 1125학	15,423.8	-	15,423.8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기정	학2	학교	초등학교	둔산리 1126학	15,129.9	-	15,129.9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2)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1	공공청사	공공청사	둔산리 1055대	2,219.2	-	2,219.2	전라북도고시 제2016-191호 (16.09.19)	1공구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주거용지(변경없음)

1)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	단독1	단독1	2,089.5	2,089.5	-1	-1	255.2	255.2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2	-2	265.0	265.0	
					-3	-3	265.0	265.0	
					-4	-4	249.7	249.7	
					-5	-5	266.4	266.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단독2	단독2	2,108.8	2,108.8	-6	-6	265.2	265.2	분할가능)
					-7	-7	265.0	265.0	
					-8	-8	258.0	258.0	
					-1	-1	258.6	258.6	
					-2	-2	265.5	265.5	
					-3	-3	265.6	265.6	
					-4	-4	261.9	261.9	
					-5	-5	261.2	261.2	
					-6	-6	267.8	267.8	
					-7	-7	267.6	267.6	
					-8	-8	260.6	260.6	
					단독3	단독3	1,187.5	1,187.5	
	-2	-2	295.5	295.5					
	-3	-3	298.1	298.1					
	-4	-4	298.0	298.0					
	단독4	단독4	3,468.2	3,468.2	-1	-1	281.7	281.7	
					-2	-2	287.0	287.0	
					-3	-3	287.1	287.1	
					-4	-4	287.1	287.1	
					-5	-5	309.6	309.6	
					-6	-6	309.8	309.8	
					-7	-7	309.9	309.9	
					-8	-8	307.4	307.4	
					-9	-9	268.2	268.2	
					-10	-10	269.1	269.1	
					-11	-11	268.8	268.8	
					-12	-12	282.5	282.5	
	단독5	단독5	1,278.2	1,278.2	-1	-1	251.0	251.0	
					-2	-2	257.1	257.1	
					-3	-3	256.9	256.9	
					-4	-4	256.7	256.7	
					-5	-5	256.5	256.5	
	단독6	단독6	4,586.7	4,586.7	-1	-1	282.1	282.1	
					-2	-2	287.2	287.2	
					-3	-3	287.3	287.3	
					-4	-4	287.4	287.4	
					-5	-5	287.6	287.6	
					-6	-6	287.8	287.8	
					-7	-7	287.8	287.8	
					-8	-8	283.1	283.1	
					-9	-9	282.5	282.5	
					-10	-10	288.7	288.7	
					-11	-11	288.8	288.8	
					-12	-12	288.8	288.8	
					-13	-13	289.0	289.0	
					-14	-14	289.0	289.0	
					-15	-15	289.0	289.0	
					-16	-16	280.6	280.6	
지원	단독7	단독7	5,178.9	5,178.9	-1	-1	250.4	250.4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256.7	256.7	
					-3	-3	256.8	256.8	
					-4	-4	274.2	274.2	
					-5	-5	273.8	273.8	
					-6	-6	257.0	257.0	
-7	-7	257.1	257.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	-8	257.1	257.1					
					-9	-9	257.2	257.2					
					-10	-10	251.4	251.4					
					-11	-11	251.6	251.6					
					-12	-12	256.4	256.4					
					-13	-13	256.4	256.4					
					-14	-14	256.4	256.4					
					-15	-15	256.4	256.4					
					-16	-16	272.9	272.9					
					-17	-17	273.8	273.8					
					-18	-18	256.3	256.3					
					-19	-19	256.5	256.5					
					-20	-20	250.5	250.5					
					단독8	단독8	5,214.7	5,214.7		-1	-1	249.2	249.2
										-2	-2	255.5	255.5
										-3	-3	255.7	255.7
										-4	-4	255.9	255.9
										-5	-5	256.1	256.1
										-6	-6	273.8	273.8
										-7	-7	272.8	272.8
-8	-8	256.7	256.7										
-9	-9	256.5	256.5										
-10	-10	274.0	274.0										
-11	-11	273.5	273.5										
-12	-12	256.4	256.4										
-13	-13	256.5	256.5										
단독9	단독9	662.3	662.3	-1	-1	325.5	325.5						
				-2	-2	336.8	336.8						
단독10	단독10	1,386.2	1,386.2	-1	-1	268.3	268.3						
				-2	-2	267.9	267.9						
				-3	-3	253.7	253.7						
				-4	-4	294.2	294.2						
				-5	-5	302.1	302.1						
단독11	단독11	1,368.9	1,368.9	-1	-1	295.8	295.8						
				-2	-2	264.3	264.3						
				-3	-3	273.9	273.9						
				-4	-4	270.2	270.2						
				-5	-5	264.7	264.7						
단독12	단독12	1,534.2	1,534.2	-1	-1	257.8	257.8						
				-2	-2	264.9	264.9						
				-3	-3	230.1	230.1						
				-4	-4	276.6	276.6						
				-5	-5	256.0	256.0						
				-6	-6	248.8	248.8						

(2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공동주택(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	공동1	공동1	37,041.8	37,041.8	-1	-1	37,041.8	37,041.8	(1공구) 획지분할 불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공동2	공동2	30,449.1	30,449.1	-1	-1	30,449.1	30,449.1	
	공동3	공동3	33,742.5	33,742.5	-1	-1	33,742.5	33,742.5	
	공동4	공동4	36,717.7	36,717.7	-1	-1	36,717.7	36,717.7	

3)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	근린1	근린1	2,147.7	2,147.7	-1	-1	559.2	559.2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497.8	497.8	
					-3	-3	520.9	520.9	
					-4	-4	569.8	569.8	
	근린2	근린2	2,074.4	2,074.4	-1	-1	484.0	484.0	
					-2	-2	494.4	494.4	
					-3	-3	506.4	506.4	
					-4	-4	589.6	589.6	
	근린3	근린3	972.9	972.9	-1	-1	972.9	972.9	
					-1	-1	570.8	570.8	
					-2	-2	555.1	555.1	
					-3	-3	494.5	494.5	
	근린4	근린4	4,973.4	4,973.4	-4	-4	499.0	499.0	
					-5	-5	601.7	601.7	
					-6	-6	597.5	597.5	
					-7	-7	597.1	597.1	
-8					-8	599.4	599.4		
근린5	근린5	2,241.1	2,241.1	-9	-9	458.3	458.3		
				-1	-1	480.9	480.9		
				-2	-2	623.3	623.3		
				-3	-3	592.4	592.4		
				-4	-4	544.5	544.5		
지원	근린6	3,187.0	3,187.0	-1	-1	894.8	894.8		
				-2	-2	754.6	754.6		
				-3	-3	501.2	501.2		
				-4	-4	518.0	518.0		
				-5	-5	518.4	518.4		
근린7	근린7	4,092.1	4,092.1	-1	-1	685.4	685.4		
				-2	-2	522.0	522.0		
				-3	-3	513.3	513.3		
				-4	-4	517.2	517.2		
				-5	-5	529.0	529.0		
-6	-6	538.7	538.7						
-7	-7	393.2	393.2						
-8	-8	393.3	393.3						

4) 준주거(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	준1	준1	2,254.8	2,254.8	-1	-1	751.5	751.5	(1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750.9	750.9	
					-3	-3	752.4	752.4	
	준2	준2	6,872.8	6,872.8	-1	-1	749.1	749.1	
					-2	-2	748.5	748.5	
					-3	-3	798.0	798.0	
					-4	-4	1,024.5	1,024.5	
					-5	-5	536.4	536.4	
					-6	-6	471.8	471.8	
					-7	-7	461.1	461.1	
					-8	-8	479.9	479.9	
					-9	-9	445.5	445.5	
	준3	준3	2,417.8	2,417.8	-10	-10	386.6	386.6	
					-11	-11	384.4	384.4	
					-12	-12	387.0	387.0	
					-1	-1	413.0	413.0	
					-2	-2	420.1	420.1	
					-3	-3	420.2	420.2	
	준4	준4	1,366.1	1,366.1	-4	-4	454.3	454.3	
					-5	-5	283.7	283.7	
					-6	-6	426.5	426.5	
	준5	준5	2,022.5	2,022.5	-1	-1	452.6	452.6	
					-2	-2	458.9	458.9	
					-3	-3	454.6	454.6	
	준6	준6	4,018.0	4,018.0	-1	-1	695.2	695.2	(2공구) 획지분할불가, 인접한 2개 획지의 1회 합병가능 (합병전 획지로 환원시 분할가능)
					-2	-2	658.5	658.5	
					-3	-3	668.8	668.8	
					-1	-1	656.1	656.1	
					-2	-2	675.3	675.3	
					-3	-3	511.2	511.2	
					-4	-4	556.5	556.5	
					-5	-5	565.7	565.7	
					-6	-6	452.9	452.9	
	-7	-7	600.3	600.3					
	준7	준7	3,291.9	3,291.9	-1	-1	649.8	649.8	
					-2	-2	1,019.4	1,019.4	
-3					-3	737.2	737.2		
-4					-4	885.5	885.5		
준8	준8	2,896.2	2,896.2	-1	-1	723.9	723.9		
				-2	-2	720.2	720.2		
				-3	-3	710.9	710.9		
				-4	-4	741.2	741.2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1) 어린이집(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	어린1	어린1	1,184.9	1,184.9	어린1	어린1	1,184.9	1,184.9	

2)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	종1	종1	1,187.5	1,187.5	종1	종1	1,187.5	1,187.5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주거용지(변경없음)

1)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단독1~12BL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진관·표구점, 자목 일반음식점, 카목 학원(500㎡ 미만), 타목 독서실·기원, 하목 일반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여 허용(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층에 허용)하고 건축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
		획지당세대수	○ 3가구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 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 10m인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0.5m 지정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에 노출되는 지상층의 외벽이나 기초 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너비 12m이상의 도로와 접한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등 여건상 부득이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혼합방식 중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경사지붕은 박공형식으로 하며 지붕구배는 가급적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한다. - 평지붕은 옥상녹화(평지붕의 50% 이상)를 하도록 한다.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방풍·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계단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며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색채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외벽 및 지붕 색상은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무채색 등 저채도를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공동1~ 4BL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층 이하 ○ 공동3~4BL의 초등학교 남측 도로변 중층배치구간은 10층 이하 (단, 학교 일조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층수완화 가능)
		주택유형	○ 공동1~4BL : 85㎡이하(분양주택)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의 배치계획시 ㄷ자형, H자형, ㄱ자형 등 폐쇄형 배치는 지양 ○ 세대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세대간 거실창호가 근접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같은 동 및 인접동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동2BL의 경우 서측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상을 이격하여 아파트 주동을 배치하고 당해 10m 이내 구간은 소음저감을 위한 완충공간(방음벽 및 방음дук)으로 조성한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 1-5호선, 중로 1-6호선, 소로1-5호선, 소로 3-1호선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의 세대당 평균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 6호연립, 그 이상인 경우 4호연립 이하로 계획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 계단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며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색채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외벽 및 지붕 색상은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무채색 등 저채도를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	근린1~7B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9.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격리병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11.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 관련 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14. 업무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부는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로 1-5호선변 1.0m 건축한계선 지정 ○ 공공공지에 면한 부분에 건축지정선 1.0m를 지정하고 해당 획지의 지정선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접하도록 함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등 여건상 부득이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전면보도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등), 굴뚝, 환기설비,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건축물의 전면부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 도시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옥상면적의 50% 이상)를 권장한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높이차에 의한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4) 준주거(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준1~ 8BL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공연장(500㎡이상), 나목 전시장 6.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7.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1천㎡미만), 다목 상점(1천㎡미만) 9.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격리병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나목 세차장, 바목 정비공장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8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부는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각각이 있는 경우 각각 포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1-5호선변에 건축한계선 1.5m 지정 ○ 공공공지에 면한 부분에 건축지정선 1.0m를 지정하고 해당 획지의 지정선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접하도록 함 ○ 상기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등 여건상 부득이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전면보도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등), 굴뚝, 환기설비,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건축물의 전면부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등 불가피한 시설은 제외) - 도시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옥상면적의 50% 이상)를 권장한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높이차에 의한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1) 어린이집(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어린이BL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10.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 11.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2)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종1BL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1.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500㎡ 미만) 및 그 부대시설 6. 종교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1) 지원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2 조성기준' 준수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구간내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완주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

2) 주거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2 조성기준' 준수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구간내에 설치 ○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변경 가능
		단지내 차량동선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급함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완주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주차대수의 40% 이하로 설치
		단지내 포장	○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단지내 조경	○ 보행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 ○ 녹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업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 수로서 교목류를 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물타리의 설치를 권장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 하도록 설계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		

3)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의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쉼터를 형성하도록 권장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완주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수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도799호선변 완충녹지6은 대기 및 악취저감을 위해 ‘별표 4’ 환경정화수종 식재시 권장기준에 따라 식재

4) 공통(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5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기타시설물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19)을 준수

<별표 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대상지내 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 주요 경관자원의 보존 및 주거환경의 보호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당해 행정구역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단, 본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 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구성 요소	수량	○ 점포당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단, 2개이상 설치 시 서로 다른 유형(벽면이용간판, 지주형, 돌출형 등)의 간판을 사용토록 한다.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꼭각지점은 유형 규제 예외)
	재질	○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자연환경, 역사자원과 인접한 경우에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적용한다.
	색채	○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이나 지나치게 순도 높은 원색사용은 지양하며,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와 조화로운 색채사용을 권장한다. ○ 바탕색에는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명	○ 자연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방식을 금한다.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을 권장한다.
	표기내용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기할 수 없다.(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 지양) ○ 표기내용은 간판바탕면적의 2/3 이내로 표시하여 여백을 가지도록 한다.
광고물 종류	벽면이용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당 1개 설치하며, 2층 이하에 표시를 권장한다.(다만, 3층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가능) ○ 도로의 꼭각지점의 접한 업소로서 벽면이용간판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동일층의 벽면이용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 가로크기는 업소 전면폭의 80%이내,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간판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건물의 여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 단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연속되는 경우 벽면이용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한다.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당 1개로 한하며, 설치위치는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3층 이하로 한다. ○ 2개 이상 설치시 간판의 돌출 폭을 일치시키고,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로 한다.
	지주이용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업소별 규격, 바탕색 및 표시내용 등을 통일한다. ○ 업소당 1개 설치하며, 건물별 1개 설치한다. ○ 표시내용은 브랜드명, 상호명과 같은 핵심 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며, 업소 단독 지주형 설치를 금하고, 입주 업소수를 감안하여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다.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1면 3m² 이내로 한다. ○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고,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간판의 표시 및 설치를 금한다. ○ 업소 개별 현수막의 표시는 지양한다. ○ 차양막은 1층에 한하며, 돌출폭은 1.2m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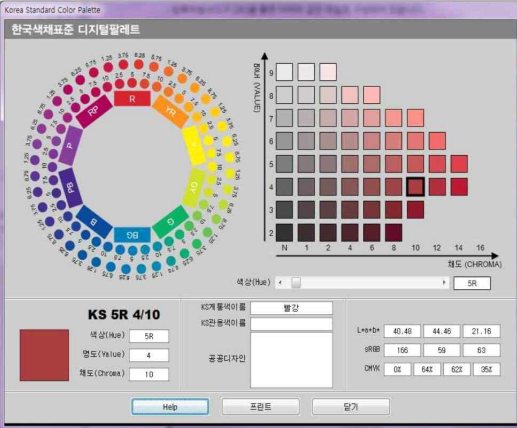
<별표 2>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변경없음)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등의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보행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용지 내 보행자도로의 전면공지의 경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영업을 위한 시설(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영업을 위한 시설은 이동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며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 진입부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정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 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색채계획의 세부기준(변경없음)

색채표현의 기준

- 한국색채표준 디지털팔레트 (국가기술표준원; KATS)
- ※ 면셀표색계의 10색상을 기본색으로 사용



용어의 정의

- 주조색 : 전체 면적의 60% 이상, 1~2개 색 사용
- 보조색 : 전체 면적의 30% 이상, 4~5개 색 사용
- 강조색 : 전체 면적의 10% 미만, 1~2개 색 사용
- 원 색 : 면셀표색계 10색상의 기본색
- 자연색 : 어떤 사물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빛깔, 인공적인 색채를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빛깔.
- 따뜻한 색 : Red(빨강) - Yellow Red(주황) - Yellow(노랑)
* 산업시설의 차갑고 삭막한 이미지 완화
- 차가운 색 : Green Blue(조록) - Blue(파랑) - Purple Blue(남색)
- 저채도 : 채도 4 이하
* 산업단지내 질서있는 경관 연출, 주변과 조화를 도모
- 계통색(명) : 색상 또는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표현하는 수식어
- 무채색 계통 : 채도 0 (흰색, 회색, 검은색)
* 산업단지내 질서있는 경관 연출, 주변과 조화를 도모
- 밝은색 계통 : 명도 6 이상
* 대규모의 건축물(시설물)이 주는 위압감, 차폐감을 저감
- 어두운색 계통 : 명도 5 이하

<별표 4> 환경정화수종 식재시 권장기준(변경없음)

구 분	공장, 도로변과 같이 오염농도가 높은 곳에서 알맞은 수종	주택가 등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알맞은 수종
전국	교목 은행나무, 튜립나무, 양버즘나무, 은단풍나무, 가중나무(가죽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참느릅나무(8종)	느티나무, 팽나무, 오동나무, 배롱나무, 밤나무, 백목련, 빛나무, 서어나무, 칠엽수, 회화나무, 감나무, 패죽나무, 층층나무, 자두나무(자도나무)(14종)
	관목 무궁화, 개나리, 낙상홍, 산수유(5종)	매화나무(매실나무), 박태기, 자목련(3종)
남부 지방	교목 소귀나무, 가시나무류, 태산목, 녹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아왜나무(7종)	
	관목 광광나무, 사철나무, 광나무, 협죽도, 차나무, 팔손이, 철쭉류(7종)	

<별표 5>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시설 및 환경을 고려한 조도 및 적절한 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확보한다. ○ 자연의 빛에 순응하고, 빛 공해가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인 야간 경관 연출을 도모한다. ○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야간경관 형성과 이용자의 심리적 만족감 증대 및 시설물이용시 인지도를 제공한다. ○ 도로, 공원 및 기타 공공장소의 옥외조명은 과도하지 않고 절제된 빛을 이용하여 광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친환경 소재와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권장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경관기본계획' 등 관계계획 및 법령을 따르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이 해당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해당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에 따른다. 																							
산업, 주거, 지원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 조명 연출을 최소화 및 휴식 보호기능을 높여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 안정적이 편안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조명의 색온도는 3,000~3,200k, 조도는 5~60 lux 범위내 설치를 권장한다. ○ 고층부 눈부심 방지 위해 CUT-OFF TYPE의 보안 등을 설치한다.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도로(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포함)의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 (KSA3701)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며, LED 조명을 사용할 경우 LED 가로 등 및 보안등 기구 기준(KSC 7658)을 준용한다.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주도로 : 충분한 조도의 가로등 배치 - 시설 진입도로 : 활동성을 고려한 하향 가로등 배치 - 산책로, 보행동선 : 안정성 확보를 고려한 정원등 배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색온도 계획</th> <th style="width: 20%;">조도계획</th> <th style="width: 20%;">휘도 계획</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주요 진출입구간</td> <td>3,200~3,500 k</td> <td>10~100 lux</td> <td>-</td> <td>명확함, 활발함</td> </tr> <tr> <td rowspan="3">도로</td> <td>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td> <td>3,200~3,500 k</td> <td>-</td> <td>1 cd/m² 이상</td> </tr> <tr> <td>집산도로</td> <td>3,000~3,200 k</td> <td>-</td> <td>0.75 cd/m² 이상</td> </tr> <tr> <td>국지도로, 보행자도로</td> <td>2,500~3,000 k</td> <td>-</td> <td>0.75 cd/m²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로 및 산책로에는 플라이트 조명을 이용해 장애물을 쉽게 인지시켜 안정적인 보행유도가 되도록 한다. ○ 셉티드(CPTED) :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개념을 도입하여 불가피한 사각지대는 CCTV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조명을 배치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구분	색온도 계획	조도계획	휘도 계획	비고	주요 진출입구간	3,200~3,500 k	10~100 lux	-	명확함, 활발함	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3,200~3,500 k	-	1 cd/m ² 이상	집산도로	3,000~3,200 k	-	0.75 cd/m ² 이상	국지도로, 보행자도로	2,500~3,000 k	-	0.75 cd/m ² 이상
구분	색온도 계획	조도계획	휘도 계획	비고																				
주요 진출입구간	3,200~3,500 k	10~100 lux	-	명확함, 활발함																				
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3,200~3,500 k	-	1 cd/m ² 이상																				
	집산도로	3,000~3,200 k	-	0.75 cd/m ² 이상																				
	국지도로, 보행자도로	2,500~3,000 k	-	0.75 cd/m ² 이상																				
녹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선에는 조도 확보용 조명연출을 적용하여 안전도를 높인다. ○ 차분하고 정적인 연출을 위해 조명의 색온도는 2,500~3,000k, 조도는 3~30 lux 범위내 설치를 권장한다. ○ 식생경관을 위해 과도한 조명자제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 밝기는 확보를 통해 주변지역에 빛공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Ⅲ.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대표 최 충 식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 166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 설치 공사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외로 연결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 개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사업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223-3번지 일원	218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13-6번지	171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3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산17-24번지 일원	331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53-19번지 일원	177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5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58-1번지 일원	122	기존 도로 연계를 위한 접속로 포장
사업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89-32번지 일원	8,762	지방도 799호와 인접한 도로(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부 포장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방법 : 민·관 합동개발
- 시행기간 : (기정)승인고시일 ~ 2023년 06월 30일
(변경)승인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완주군청(미래전략담당관 ☎ 063-29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5호

농업진흥지역 정정(해제) 고시

-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3~14조 및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및 토지조서 보완·관리 요령에 의거 전라북도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 비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정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시·군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면적

(단위 : ha)

구 분	농업진흥지역			비 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라북도	135,779.6	117,435.2	18,344.4	- 진흥 : $\Delta 27.7$	- 보호 : $\Delta 67.7$
전주시	608.0	606.3	1.7	- 진흥 : $\Delta 0.1$	- 보호 :
군산시	11,589.5	10,698.9	890.6	- 진흥 : $\Delta 5.8$	- 보호 : $\Delta 1.9$
익산시	16,533.9	15,519.8	1,014.1	- 진흥 : $\Delta 1.4$	- 보호 : $\Delta 5.1$
정읍시	15,320.9	13,957.3	1,363.6	- 진흥 : $\Delta 2.5$	- 보호 : $\Delta 8.4$
남원시	11,306.2	9,829.4	1,476.8	- 진흥 : $\Delta 2.4$	- 보호 : $\Delta 13.6$
김제시	21,627.3	20,090.2	1,537.1	- 진흥 : $\Delta 6.2$	- 보호 : $\Delta 1.9$
완주군	5,814.0	4,365.3	1,448.7	- 진흥 : $\Delta 2.4$	- 보호 : $\Delta 7.2$
진안군	3,805.0	2,925.5	879.5	- 진흥 : $\Delta 0.2$	- 보호 : $\Delta 2.3$
무주군	2,383.7	1,891.7	492.0	- 진흥 : $\Delta 0.4$	- 보호 : $\Delta 1.2$
장수군	3,761.9	3,043.8	718.1	- 진흥 : $\Delta 0.4$	- 보호 : $\Delta 0.7$
임실군	5,594.4	4,382.4	1,212.0	- 진흥 : $\Delta 0.5$	- 보호 : $\Delta 7.4$
순창군	7,584.3	6,305.4	1,278.9	- 진흥 : $\Delta 2.7$	- 보호 : $\Delta 7.8$
고창군	14,770.5	10,463.5	4,307.0	- 진흥 : $\Delta 1.0$	- 보호 : $\Delta 8.0$
부안군	15,080.0	13,355.7	1,724.3	- 진흥 : $\Delta 1.7$	- 보호 : $\Delta 2.2$

※ 지형도면 : 실음생략

2. 정정 사유

-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 비농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953,583.4m² 정정(해제)

3. 농업진흥지역 도면(1/5,000) 및 토지조서는 시·군 농지부서에 보관한다.

4.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한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17호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 702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회전교차로 1개소 설치(내접원 지름 36m)		
도로공사 구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275-5번지 일원		
도로공사 시행장소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275-5번지 일원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2. 10. 11.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당초 : 2023. 05. 30. 변경 : 2024. 12. 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공구) 관련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702호선 접속부를 회전교차로로 개선 * (변경사유) 회전교차로 편입용지 협의매수 어려움으로 수용절차 등을위한 공사기간 연장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2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재단법인 퍼스트환경연구원)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허가 번호 : 제2023-21호
2. 법 인 명 : 재단법인 퍼스트환경연구원
3.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7-7
4. 대표자 : 김민환
5. 허가연월일 : 2023. 06. 27
6. 설립 목적 : 토양·지하수 등 환경오염 관리 및 제어와 분석·기술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공공 이익에 기여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2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6. 30.

전라북도지사

□ 공 고 사 항

등록번호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사업	등록일
제2023-1-전라북도-13호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부안지회	이명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시각장애인 재활 및 상담 등	2023. 6. 27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1226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국제코리아인권센터
2.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10, 완풍빌딩(7층)
3. 대표자성명 : 조 승 배
4. 설 립 목 적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에 이바지하여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1조(명칭), 제2조(소재지), 제3조(목적), 제4조(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6조(이익의 제공), 제7조(회원의 구분), 제8조(회원의 권리), 제13조(임원의 선임),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제20조의1(총회의 구성), 제21조의1(구분 및 소집), 제21조의2(서면결의), 제34조(수입금), 제41조(임원의 보수), 제42조(사무국), 제43조(해산 및 합병), 제44조(잔여재산의 처분))
6. 변경허가연월일 : 2023. 6. 27.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29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 공 고 사 항

허가번호	허가일자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
제2023-23호	2023. 6. 27.	행복한걸음 (신은우)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37,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 사업 ○ 자원봉사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사업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30호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개발업 말소된 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 폐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상호 및 대표자	말소연월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유한회사 케이엔케이 (기은경)	2023.6.26.	전북220001 (210114-015439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91, 상가 103동 118호	사업종료

.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31호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개발업 말소된 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 폐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6월 30일

상호 및 대표자	말소연월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유한회사 명광종합건설 (김성광)	2023.6.26.	전북120020 (214814-000450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25, 2층	사업종료

. 끝.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6. 23.(금) 09:0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38	전북사랑도민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향도민 및 지역 연고자 대상 지역활력 제고와 장래인구 증대를 위해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 타시도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7월 중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 전남 ‘전남사랑에 서포터즈 운영(’22.9.~)’ : 목표 100만명(37만명 등록) (주관 : 청년정책과)</p>
2023-39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 명예와 자긍심 제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북인을 선발하여 매년 도민의 날(10.25.)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여하고 있음 ○ 도내 시군과 기관·단체에 후보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우수한 공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선거법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치행정과)</p>
2023-4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률 제고를 위한 멘토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국적을 취득해 도내에서 자원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이므로, ○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1:1 멘토단을 운영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여성가족과)</p>
2023-41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후속조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6.20.) 결과 도내 대학 중 전북대가 지정되었으므로 최종 10개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협력해 준비하기 바람, ○ 예비지정에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번 심사 결과, 심사위원 및 교육부 등의 중점 심사방향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서 내년 재도전을 위한 개선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교육협력추진단)</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당면·현안업무</p>	<p>○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모멘텀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공모 선정 시까지 이차전지 산업 기반 마련, 인력 수급 해소,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 특화단지 유치 모멘텀을 지속하기 바라며, 도민의 유치 염원을 전달하는 등 소통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미래산업과)</p> <hr/> <p>당면·현안업무</p> <p>○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대응 및 후속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6.21.)’에서 ①순환경제 활성화, ②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③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으므로 부처별 발표 정책 중 기업지원과 정부 후속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에서 발표한 순환경제 ‘9대 산업-9대 프로젝트’의 배터리, 재생연료 분야는 우리 도의 기업과 산업 관련성이 높으므로 기업 현황 및 경쟁력 등을 파악해 적극 대응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미래산업국 / 협조 : 기업유치지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분야에서는 민간자본 5조원 유치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우리 도가 중점 추진하는 스마트팜, 동물용의약품, 농식품 가공산업, 푸드 클러스터 등에서 민간투자 확대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농생명축산식품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서 우리도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들 전문가를 월레포럼에 초청해 도정 반영 인식을 높여가는 등 신기술과 새로운 개척분야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미래산업국, 총무과 / 협조 : 기업유치지원실)</p> <hr/> <p>○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방지대책 시행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역축제에서 먹거리 관련 바가지 요금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논란이 되고 있음 - 시군에 전파한 축제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 무주 산골영화제가 착한가격으로 주목받은 만큼 타 시군에도 모범사례로 전파하는 등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관광산업과)</p>

군산시 고시 제2023-109호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3-103(2023.6.23.)호로 고시한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대하여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내용 중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 6. 30.
군 산 시 장

□ 정정고시 내용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정정)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정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3	공공청사	우체국	내홍동 1015-2	1,103.9	전북고425 '09.12.31	
변경	23	공공청사	공공청사	내홍동 1015-2	1,103.9	전북고425 '09.12.31	면적정정
기정	24	공공청사	파출소	내홍동 1016-1	3,794.8	전북고425 '09.12.31	
변경	24	공공청사	공공청사	내홍동 1016-1	3,794.8	전북고425 '09.12.31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공공청사	- 시설의 종류 변경 우체국 → 공공청사	- 향후 공공청사 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의 종류 변경
24	공공청사	- 시설의 종류 변경 파출소 → 공공청사	- 향후 공공청사 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의 종류 변경

□ 정정 사유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의 공공청사 변경내용 중 면적오기 사항에 대한 정정

□ 정정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고시 제2023-103(2023.6.23.)호와 동일함

군산시 고시 제2023 - 11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미룡동 29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290-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사업
 - 나. 명 칭 :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통합교육관 신축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개요
 - 가. 부지면적 : 801,900㎡
 - 나. 사업개요 :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통합교육관 신축(지상1~4층)
- 건축면적 1,366.42㎡, 연면적 5,344.93㎡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 나. 성 명 : 군산대학교 총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4.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참조
-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가. 총 편입 토지 총괄표

구 분	합 계		구성비 (%)	국,공유지		사 유 지		비 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총 계	81	801,900	100%	58	795,963	23	5,937	
대 지	7	1,819	0.23%	4	1,112	1	59	
도 로	27	3,918	0.49%	23	3,709	4	209	
진	13	5,376	0.67%	9	2,240	6	3,784	
답	5	4,261	0.53%	4	4,232	1	29	
임 야	20	21,134	2.64%	11	19,677	9	1,457	
학 교	6	763,920	95.26%	6	763,920	-	-	
구 거	3	1,472	0.18%	1	1,073	2	399	

나. 편입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총계				871,867	801,900			
1	미룡동	290 2	학	467,665	460,065	국(교육부)		국학	
2	미룡동	303 3	답	2,487	2,487	국(교육부)		국답	
3	미룡동	315 5	도	25,237	117	군산시		국도	
4	미룡동	350 7	도	23	18	국(교육부)		국도	
5	미룡동	454 2	도	519	7	군산시		국도	
6	미룡동	457 6	도	328	268	국(교육부)		국도	
7	미룡동	458 13	도	47	43	국(교육부)		국도	
8	미룡동	461 2	도	906	3	국(농수산부)		국도	
9	미룡동	461 10	도	25	1	국(교육부)		국도	
10	미룡동	660 14	대	2,273	59	한*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27	사대	
11	미룡동	667 6	도	60	60	전*풍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사도	
12	미룡동	668 2	도	693	657	국(교육부)		국도	
13	미룡동	692 2	도	23	23	김*옥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394	사도	
14	미룡동	697 2	도	10	10	국(교육부)		국도	
15	미룡동	699	학	6,517	6,517	전라북도(교육감)		국학	
16	미룡동	704 3	대	388	388	국(교육부)		국대	
17	미룡동	704 5	학	53	53	국(교육부)		국학	
18	미룡동	704 6	도	19	19	국(교육부)		국도	
19	미룡동	705 1	도	33	33	김*태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361	사도	
20	미룡동	720 6	구	283	283	한국농어촌공사		사구	
21	미룡동	720 7	구	116	116	한국농어촌공사		사구	
22	미룡동	834 3	도	9	9	국(교육부)		국도	
23	미룡동	834 7	도	32	32	국(교육부)		국도	
24	미룡동	834 9	도	4,337	316	국(국토교통부)		국도	
25	미룡동	834 28	도	60	59	국(교육부)		국도	
26	미룡동	834 62	도	11	11	국(국토교통부)		국도	
27	미룡동	840	도	496	496	국(교육부)		국도	
28	미룡동	산67 2	임	198	198	국(교육부)		국임	
29	미룡동	산70	임	1,432	476	박*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임	
30	미룡동	산77 1	도	240	240	국(국토교통부)		국도	
31	미룡동	산97	임	99	99	국(교육부)		국임	
32	미룡동	산116	임	17,361	17,361	국(교육부)		국임	
33	미룡동	산123 1	임	595	595	국(교육부)		국임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33	미룡동	산123	1	입	595	595	국(교육부)	국입	
34	미룡동	산125		입	198	198	국(교육부)	국입	
35	미룡동	산126		입	99	99	국(교육부)	국입	
36	신관동	1		학	70,298	70,298	국(교육부)	국학	
37	신관동	41	3	도	53	53	국(교육부)	국도	
38	신관동	41	34	전	638	638	국(교육부)	국전	
39	신관동	41	36	답	634	634	국(교육부)	국답	
40	신관동	41	37	답	1,008	180	국(교육부)	국답	
41	신관동	42	81	구	1,895	1,073	국(교육부)	국구	
42	신관동	160	1	전	175	2	국(교육부)	국전	
43	신관동	161		전	40	37	국(교육부)	국전	
44	신관동	162		전	744	332	국(교육부)	국전	
45	신관동	163		대	413	413	국(교육부)	국전	
46	신관동	164		대	235	235	국(교육부)	국전	
47	신관동	165		전	73	73	국(교육부)	국전	
48	신관동	166		대	311	311	국(교육부)	국대	
49	신관동	167		대	155	155	국(교육부)	국대	
50	신관동	168		대	258	258	국(기획재정부)	국대	
51	신관동	169		전	311	222	국(교육부)	국전	
52	신관동	178	2	입	60	60	국(교육부)	국입	
53	신관동	190		전	899	693	이*세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북길 506신관동	사전
54	신관동	190	1	전	1,983	1,934	김*자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189	사전
55	신관동	288		전	975	975	이*세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북길 506신관동	사전
56	신관동	290	2	학	225,819	224,667	국(교육부)		국학
57	신관동	304		전	288	288	국(교육부)		국전
58	신관동	327	3	도	93	93	황*옥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2가 47	사도
59	신관동	356		답	1,782	931	국		국답
60	신관동	357		전	2,020	22	조*일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1702통1번	사전
61	신관동	361		전	641	92	김*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사전
62	신관동	403		답	1,421	29	김*철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사답
63	신관동	405		전	902	68	조*기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45	사전
64	신관동	427		학	3,274	2,320	국(교육부)		국학
65	신관동	429	31	입	324	5	유*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2	사입
66	신관동	941	9	도	22	22	국(국토교통부)		국도
67	신관동	941	10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국도
68	신관동	941	22	도	738	738	국(교육부)		국도
69	신관동	941	31	도	797	82	국(국토교통부)		국도
70	신관동	산14	7	입	451	451	최*수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299	사입
71	신관동	산16	6	입	99	99	국(교육부)		국입
72	신관동	산26		입	5,646	87	나*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9	사입
73	신관동	산31		입	56	56	문*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사입
74	신관동	산35		입	992	105	김*이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8동	사입
75	신관동	산53		입	2,281	123	한*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사입
76	신관동	산62	1	입	818	818	국(교육부)		국입
77	신관동	산71	1	입	3,574	123	국(교육부)		국입
78	신관동	산73		입	1,488	27	국(산림청)		국입
79	신관동	산76		입	2,018	48	박*순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501	사입
80	신관동	산79		입	1,785	106	허*경	경기도 광주시 태성로 107 108동 408호	사입
81	신관동	산112		도	298	298	국(교육부)		국도

군산시 고시 제2023 - 11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소룡동 1584번지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소룡동 158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 나. 명 칭 : 군산 공공하수처리장 농축조 협잡물처리기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개요
 - 가. 부지면적 : 237,202.1㎡
 - 나. 사업개요 : 협잡물처리동 1동 증축, 지상1층(건축면적 100㎡, 연면적 10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성 명 : 군산시장(하수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총계				240,345.1	237,202.1			
1	소룡동	1584	잡	240,345.1	237,202.1	군산시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3 - 11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164호(2016.12.30.)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2단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2-1단계 준공
 - 가. 면적 : 176,895.9㎡(2-1단계 : 154,109.9㎡ / 2-2단계 : 22,786㎡)
 - 나. 규모 : 176,895.9㎡(연구시설 : 109,801㎡ / 기반시설 : 9,943㎡ / 녹지 : 57,151.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명 : 군산시장(산업혁신과) / 나.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2-2단계 : [당초] 2016.12.30.~2023.06.30. [변경] 2016.12.30.~2024.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포면	851	잡	154,109.9	154,109.9	군산시				1단계
2	“	729-4	구	3,394	408	군산시				2단계
3	“	312-5	전	2,483	2,483	군산시				2단계
4	“	산16-6	임	7,934	5,713	군산시				2단계
5	“	산18	임	13,003	13,003	군산시				2단계
6	“	산18-1	임	683	683	군산시				2단계
7	“	산253	구	496	496	군산시	-			2단계
계					176,895.9					2단계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익산시 고시 제2023-131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익산시 고시 제2023-65호(2023.3.24.)로 고시된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정정사항(토지소유자 누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6월 30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외 4개소)사업
- 사업의 명칭 : 함열읍 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시 설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소로2류2호	함열읍 와리 687번지 일원	• L=74.6m, B=2m, 면적=687㎡	
소로1류8호		• L=94.3m, B=3m, 면적=186㎡	
소로1류814호		• L=126.3m, B=4m, 면적=511㎡	
소로2류3호		• L=97.8m, B=2m, 면적=239㎡	
소로1류815호		• L=125.3m, B=2~5m, 면적=45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익산시 합열읍 와리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638-4	대	617	5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638-9	대	41	2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668-5	대	135	5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669-1	전	247	5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669-4	전	165	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670-4	답	239	7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674-2	전	149	76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686-2	전	570	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686-5	전	969	10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686-6	전	242	11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1	686-13	임	310	4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686-44	전	40	38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3	687-1	전	3,134	10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4	689-2	전	165	1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5	689-5	전	165	4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6	689-8	전	49	1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7	690	전	332	103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8	690-6	전	238	7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9	691	전	56	4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0	1129-39	도	170	7	국토교통부				
21	1129-47	도	803	28	국토교통부				
22	163-5	도	3,572	58	익산시				
23	196-2	답	32	31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	196-3	유	9	9	익산시				
25	196-4	답	3	3	익산시				
26	196-7	답	2,080	39	김진*	낭산면 용기리 *			
27	196-35	답	194	2	익산시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8	196-36	답	198	29	박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길 *			59/198
					유승*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점대로42번길 *			40/198
					이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			59/198
					진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			40/198
29	196-37	답	474	88	임영*	경기도 김포시 결포1로 *			144/474
					김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			115/474
					한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86/474
					김홍*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			14/474
					염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원로 *			43/474
					김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			29/474
					고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			43/474
30	196-38	답	856	161	신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 *			595/856
					이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			261/856
31	685-4	전	18	14	익산시				
32	686-32	전	251	17	구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두라2길 *	북익산농조 업협합	익산시 함열읍 함열5 길 46(근저당권)	1/2
					허*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2길 *			1/2
33	635-1	답	731	6	익산시				
34	670-2	도	1,506	88	익산시				
35	670-17	답	118	118	익산시				
36	670-18	답	3	3	교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솔즈베리 *			165/330
					익산시			165/330	
37	670-19	답	42	42	익산시				
38	1129-58	도	46	46	국토교통부				
39	1129-60	도	17	17	국토교통부				
40	669	전	121	121	익산시				
41	689-7	전	136	136	익산시				

정읍시 고시 제2023-103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 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6월 30일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1	99	11	국지 도로	143	대1-2/연지동 364-4	중2-16/연지동 362-1	일반 도로		'87.4.22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소로1-99	소로1-99	· 위치 : 연지동 364-4번지 일원 · 연장 : L=143m, 폭원 : B=11m · 변경 : 일부 가각변경	·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로 가각 반영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 : “계재생략

정읍시 공고 제2023-1023호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6월 30일

1.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0	농소동 00공동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 농소동 189-25, 127-56번지 일원	-	증)25,125	25,125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 사유
0	농소동 00공동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 농소동 189-25, 127-56번지 일원	25,125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역내의 주거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사항 없음”
- 다. 용도구역 결정 조서 “해당사항 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도로	6,650	9호광장/상평동293-2	하북동 구역계/90-1	일반 도로	2,3,5호 광장	'96.11.21	
변경	대로	1	3	35~40	주간선 도로	6,650 (188)	9호광장/상평동293-2	하북동 구역계/90-1	일반 도로	2,3,5호 광장	'96.11.21	
신설	중로	2	00	15~20	국지 도로	72	대1-3/농소동 697-3	농소동구역계/189-25	일반 도로	대로(주) 1-3	"금회"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폭원, 연장, 기점, 종점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대로1-3	대로1-3	· 도로폭 : 35~40m · 연장 : 6,650m · 가감속차로연장 :188m	· 가·감속 차선 확보를 위한 일부 폭원확폭 (감차로 폭 3.4 - 가속차로 폭 3.8m)
-	중로2-00	· 도로폭 : 15~20m · 연 장 : 72m	· 농소동APT1,2단지일원 진·출입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신설(복개)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 기능부여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총 계		23,221			23,221	
-	I	10,862	①	농소동189-25번지 일원	10,862	
-	II	12,359	①	농소동127-56번지 일원	12,359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내 용	법 규 정 (정읍시조례)
	가 구	획 지			
-	I	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건폐율	· 30%이하 (22.35%)	· 30%이하
			용적률	· 250%이하 (249.25%)	· 250%이하
			높 이	· 지하 2층, 지상27층	
			형 태	· 탐상형 4호조합 이내 · 주민보행, 개방감확보를 위한 일부 저층부 필로티 설치	
			배 치	· 주변지역의 환경과 조화되고, 단지 내 주민들의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 되도록 남·동향 위주의 주동배치 · 단지내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주동배치	
			건 축 한계선	· 건축법에 따름	
			색 채	· 색채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주변자연과 조화를 고려 - 구조색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 - 보조색 : 구조색과 같은 계통으로 4가지 이내 권장 - 강조색 : 제한없음	
-	II	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건폐율	· 30%이하 (15.93%)	· 30%이하
			용적률	· 250%이하 (249.10%)	· 250%이하
			높 이	· 지하 2층, 지상27층	
			형 태	· 탐상형 4호조합 이내 · 주민보행, 개방감확보를 위한 일부 저층부 필로티 설치	
			배 치	· 주변지역의 환경과 조화되고, 단지 내 주민들의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 되도록 남·동향 위주의 주동배치 · 단지내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주동배치	
			건 축 한계선	· 건축법에 따름	
			색 채	· 색채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주변자연과 조화를 고려 - 구조색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 - 보조색 : 구조색과 같은 계통으로 4가지 이내 권장 - 강조색 : 제한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 획지에 관한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차량의 진·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허용한다.

3. 공람기간 : 공고 다음날부터 14일

4. 공람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정읍시청 도시과(☎ 063-539-5782)

5. 관련도서 : “계재생략”(관련도서는 정읍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개)

완주군 고시 제2023-65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6월 30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720번지 외 39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 명 칭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퇴비사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구시설 : A=1,721,748.4㎡
 - (대지면적 : A블럭: 352,374.9㎡, B블럭: 175,272.74㎡, C블럭: 28,903.6㎡)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증축	변경	기정	증축	변경	
합계	60,244.71	184.32	60,429.03	81,030.01	184.32	81,214.33	
A블럭	소계	48,616.00	184.32	48,800.32	68,323.69	184.32	68,508.01
	주1,부1~41	48,616.00	-	48,616.00	68,323.69	-	68,323.69
	부42	-	184.32	184.32	-	184.32	184.32
B블럭	소계	11,171.19	-	11,171.19	12,250.32	-	12,250.32
	주1,부1~22	11,171.19	-	11,171.19	12,250.32	-	12,250.32
C블럭	소계	457.52	-	457.52	456.00	-	456.00
	주1,부1	457.52	-	457.52	456.00	-	456.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완주군 공고 제2023-1135호

완주 군계획시설(방수설비:구와배수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완주 군계획시설(방수설비:구와배수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열람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6월 30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33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방수설비)사업
 - 나. 명 칭 : 방수설비(구와배수로)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방수설비 : A=17,928㎡ L=1,7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기정 : 2020. 3. 20. ~ 2023. 06. 30.
 - 나. 변경 : 2020. 3. 20.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게재생략
7.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476)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150필지					17,928	17,928			
1	삼례	구와	336-8	제	52	52	한국농어촌공사		
2	삼례	구와	338-7	구	123	123	한국농어촌공사		
3	삼례	구와	341-2	답	20	20	한국농어촌공사		
4	삼례	구와	341-3	구	12	12	한국농어촌공사		
5	삼례	구와	344-1	구	162	162	한국농어촌공사		
6	삼례	구와	344-10	구	800	800	한국농어촌공사		
7	삼례	구와	360-4	구	23	23	한국농어촌공사		
8	삼례	구와	370-5	구	167	167	한국농어촌공사		
9	삼례	구와	371-4	구	500	500	한국농어촌공사		
10	삼례	구와	372-2	답	159	159	한국토지주택공사		
11	삼례	구와	376-2	구	28	28	한국농어촌공사		
12	삼례	구와	376-3	답	380	380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삼례	구와	378-2	답	88	88	한국토지주택공사		
14	삼례	구와	529-3	답	2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15	삼례	구와	529-4	구	154	154	한국농어촌공사		
16	삼례	구와	529-5	답	155	155	한국농어촌공사		
17	삼례	구와	530-1	구	72	72	한국농어촌공사		
18	삼례	구와	530-2	답	103	103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삼례	구와	531-3	구	4	4	한국농어촌공사		
20	삼례	구와	532-2	답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삼례	구와	532-3	답	2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22	삼례	구와	532-5	답	709	709	한국토지주택공사		
23	삼례	구와	532-8	구	337	337	한국농어촌공사		
24	삼례	구와	533-7	장	15	15	한국토지주택공사		
25	삼례	구와	533-8	답	11	11	한국농어촌공사		
26	삼례	구와	533-9	답	28	28	한국토지주택공사		
27	삼례	구와	533-10	답	46	46	한국토지주택공사		
28	삼례	구와	569-3	답	476	476	한국토지주택공사		
29	삼례	구와	569-4	답	36	36	한국토지주택공사		
30	삼례	구와	569-5	답	72	72	한국토지주택공사		
31	삼례	구와	569-6	답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m)	편입면적 (m)	토지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32	삼례	구와	570-2	답	131	131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삼례	구와	571-3	답	82	82	한국토지주택공사		
34	삼례	구와	571-4	답	155	155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삼례	구와	572-1	창	165	165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삼례	구와	573-1	답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37	삼례	구와	573-2	답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38	삼례	구와	574-2	답	156	156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삼례	구와	574-3	답	159	159	한국토지주택공사		
40	삼례	구와	575-5	구	128	128	한국농어촌공사		
41	삼례	구와	575-9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42	삼례	구와	575-10	답	81	81	한국토지주택공사		
43	삼례	구와	575-11	도	9	9	한국토지주택공사		
44	삼례	구와	575-12	답	139	139	한국토지주택공사		
45	삼례	구와	575-13	답	21	21	한국토지주택공사		
46	삼례	구와	601-5	답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47	삼례	구와	602-7	도	16	16	완주군		
48	삼례	구와	602-8	답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49	삼례	구와	602-9	답	52	52	한국토지주택공사		
50	삼례	구와	602-10	답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51	삼례	구와	603-6	답	43	43	한국토지주택공사		
52	삼례	구와	610-7	답	37	37	한국토지주택공사		
53	삼례	구와	610-10	답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54	삼례	구와	610-11	답	8	8	한국토지주택공사		
55	삼례	구와	610-12	도	14	14	완주군		
56	삼례	구와	610-13	답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57	삼례	구와	610-14	답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		
58	삼례	구와	613-1	답	94	94	한국토지주택공사		
59	삼례	구와	613-2	답	61	61	한국토지주택공사		
60	삼례	구와	613-3	답	23	23	한국토지주택공사		
61	삼례	구와	614-1	답	14	14	한국토지주택공사		
62	삼례	구와	615-1	답	46	46	한국토지주택공사		
63	삼례	구와	615-2	답	96	96	한국토지주택공사		
64	삼례	구와	622-1	답	35	35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m)	편입면적 (m)	토지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65	삼례	구와	662-1	답	86	86	한국토지주택공사		
66	삼례	구와	665-2	도	24	24	국토교통부		
67	삼례	구와	812-4	구	13	13	한국농어촌공사		
68	삼례	구와	874-1	도	67	67	국토교통부		
69	삼례	구와	874-4	구	98	98	농림축산식품부		
70	삼례	구와	874-5	구	7	7	농림축산식품부		
71	삼례	구와	874-14	구	283	283	농림축산식품부		
72	삼례	구와	874-18	구	57	57	농림축산식품부		
73	삼례	구와	874-19	구	45	45	농림축산식품부		
74	삼례	구와	874-21	구	632	632	농림축산식품부		
75	삼례	구와	874-24	구	455	455	한국토지주택공사		
76	삼례	구와	874-26	구	42	42	한국토지주택공사		
77	삼례	구와	874-28	구	19	19	농림축산식품부		
78	삼례	구와	874-29	구	152	152	농림축산식품부		
79	삼례	구와	874-31	구	132	132	농림축산식품부		
80	삼례	구와	874-32	구	38	38	농림축산식품부		
81	삼례	구와	874-34	구	56	56	농림축산식품부		
82	삼례	구와	874-38	구	1,409	1,409	농림축산식품부		
83	삼례	구와	874-40	구	53	53	농림축산식품부		
84	삼례	구와	874-41	구	53	53	농림축산식품부		
85	삼례	구와	874-42	구	63	63	농림축산식품부		
86	삼례	구와	874-43	구	47	47	한국토지주택공사		
87	삼례	구와	874-44	구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88	삼례	구와	874-45	구	838	838	농림축산식품부		
89	삼례	구와	874-47	구	137	137	한국토지주택공사		
90	삼례	구와	874-48	구	37	37	한국토지주택공사		
91	삼례	구와	874-49	구	214	214	한국토지주택공사		
92	삼례	구와	874-50	구	236	236	농림축산식품부		
93	삼례	구와	874-51	구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94	삼례	구와	874-52	구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95	삼례	구와	874-53	구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96	삼례	구와	874-54	구	109	109	한국토지주택공사		
97	삼례	구와	874-55	구	109	109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m)	편입면적 (m)	토지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98	삼례	구와	874-56	구	15	15	한국토지주택공사		
99	삼례	구와	874-57	구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삼례	구와	874-58	구	150	150	농림축산식품부		
101	삼례	구와	874-59	구	34	34	한국토지주택공사		
102	삼례	구와	874-60	구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		
103	삼례	구와	874-61	구	154	154	한국토지주택공사		
104	삼례	구와	874-62	구	76	76	한국토지주택공사		
105	삼례	구와	874-63	구	136	136	한국토지주택공사		
106	삼례	구와	874-64	구	16	16	한국토지주택공사		
107	삼례	구와	874-65	구	33	33	한국토지주택공사		
108	삼례	구와	874-66	구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109	삼례	구와	874-67	구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110	삼례	구와	874-68	구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111	삼례	구와	874-69	구	56	56	한국토지주택공사		
112	삼례	구와	874-70	구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삼례	구와	874-71	구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114	삼례	구와	874-72	구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삼례	구와	874-73	구	101	101	한국토지주택공사		
116	삼례	구와	874-74	구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117	삼례	구와	874-75	구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삼례	구와	874-76	구	2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119	삼례	구와	874-77	구	55	55	한국토지주택공사		
120	삼례	구와	874-78	구	169	169	한국토지주택공사		
121	삼례	구와	874-79	구	5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122	삼례	구와	874-80	구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		
123	삼례	구와	874-81	구	96	96	한국토지주택공사		
124	삼례	구와	874-82	구	94	94	농림축산식품부		
125	삼례	구와	874-83	구	58	58	한국토지주택공사		
126	삼례	구와	890-2	도	157	157	국토교통부		
127	삼례	구와	890-4	도	81	81	한국토지주택공사		
128	삼례	구와	890-7	도	33	33	국토교통부		
129	삼례	구와	890-8	도	126	126	한국토지주택공사		
130	삼례	구와	891-1	도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131	삼례	구와	896-1	도	36	36	한국토지주택공사		
132	삼례	구와	905-1	도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133	삼례	구와	906-3	도	48	48	농림축산식품부		
134	삼례	신타	620-1	답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5	삼례	신타	904-2	답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136	삼례	신타	907-3	답	171	171	한국토지주택공사		
137	삼례	신타	907-4	답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138	삼례	신타	907-5	답	31	31	한국토지주택공사		
139	삼례	신타	908-1	답	495	495	한국토지주택공사		
140	삼례	신타	908-2	답	12	12	한국토지주택공사		
141	삼례	신타	913-12	답	15	15	한국토지주택공사		
142	삼례	신타	920-48	도	40	40	국토교통부		
143	삼례	신타	920-51	구	1,364	1,364	농림축산식품부		
144	삼례	신타	920-57	구	378	378	한국토지주택공사		
145	삼례	신타	920-58	구	109	109	한국토지주택공사		
146	삼례	신타	920-59	구	300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147	삼례	신타	920-60	구	140	140	한국토지주택공사		
148	삼례	신타	920-61	구	113	113	한국토지주택공사		
149	삼례	신타	920-62	구	349	349	한국토지주택공사		
150	삼례	신타	947-1	도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3-2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 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5호위반으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전자예금 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김제소방서장
2023년 6월 30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김민지(생년월일 : 660311-2*****)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12-20

2. 위반내용 :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용도폐지 미신고

3.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39조 제1항 제5호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 2,180,000원(금 이백일십팔만원) *가산금 포함

5. 압류연월일 : 2023. 5. 9.

6. 압류구분 : 전자예금

7. 납부방법 : 김제소방서 수입금출납원(전북은행 1013-01-3533103)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40-4245)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3-3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 송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위반으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자동차)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김제소방서장

2023년 6월 30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강동명(생년월일 : 860714-1*****)

나.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남북로 173, 3층

2. 위반내용 : 영업장 내부통로구조의 변경 위반

3.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 1,078,000원(금 일백육만육천원) *가산금 포함

5. 압류연월일 : 2023. 6. 1.

6. 압류구분 : 동산(자동차)

7. 납부방법 : 김제소방서 수입금출납원(전북은행 1013-01-3533103)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40-4245)